



- 2020년도 제3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

목 차

< 일 반 회 계 >

○ 문화정책과	-----	3
○ 문화유산과	-----	81
○ 체육진흥과	-----	109
○ 관광진흥과	-----	165
○ 충남도서관	-----	215

< 특 별 회 계 >

○ 문화정책과	-----	249
○ 관광진흥과	-----	257

일 반 회 계

문 화 정 책 과

문화정책과

1. 지역문화 활동사업	7
2. 한국군 및 UN군 6·25참전용사 합동위령제	9
3.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 사업	11
4. 천안 서북구문화원 건립	14
5.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16
6.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전환사업)	18
7. 충남문화재단 운영	20
8. 서해안 비치 국제 뮤직 페스타	22
9. 국제 문화예술 교류사업	24
10. 윤봉길 의사 뮤지컬	26
11.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	28
12. 전국청소년민속예술 참가	30
13.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 개최	32
14. 천안홍타령춤축제	34
15.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36
16. 트릭아트 조성사업	39
17. 민속농악 상설공연지원	41

18. 장항선셋축제	43
19. 계룡군문화엑스포 공연지원	45
20.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7
21. 2021 세계문화산업 발전 진흥포럼 연구용역	49
22. 홍성국제단편영화제	51
23.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54
24. 천안문화도시 운영	56
25.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직무연찬회 개최	59
26. 도립미술관 운영 방안 연구용역	61
27.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사업	63
28. 도립미술관 설계공모관리용역	65
29. 도 문예회관 무대장치 보수	67
30. 시설장비유지비 등	69
31. 사회복지무요원 보상금(급여 등)	71
32. 문화관 유물 및 사비성 전시물 관리	73
33.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자유학기제)운영 ...	75
34. 전시공사 및 전시보조물 제작설치	78

지역문화 활동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지차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 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문화 진흥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8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7,000천원(도비) 【기정예산 566,000천원 - 추경 감 29,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 사 업 량 : 지역문화활동사업 19건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8개 시군
- 사업 내용 : 지역문화진흥 및 지방문화원 활동사업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9조,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국고보조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2.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
3.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4.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 활동사업 : 1,074,000천원 (도비537,000, 시군비537,000) ○ 8개 시군 19개 사업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74,000	0	1,132,000	1,074,000	-58,000	0	
국 비	0				0		
도 비	537,000		566,000	537,000	-29,000		
시군비	537,000		566,000	537,000	-29,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67,000	267,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은미 (행) 3814

한국군 및 UN군 6·25참전용사 합동위령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국전쟁(6.25) 시 전사한 한국군, UN군 등의 영혼들의 안식과 생원을 기원하는 위령제를 통해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통일을 염원
- 사업 위치 : 공주시 관내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기정예산 20,000천원 - 추경 감 20,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위령제, 추모 분향단 운영, 추모 및 문화공연
-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

국가보훈기본법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군 및 UN군 6·25참전용사 합동위령제 ○ 0원 *코로나 19로 인한 사업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40,000	0	-40,000	0	
국 비	0				0		
도 비	0		20,000	0	-20,000		
시군비	0		20,000	0	-2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이종명 (행) 3812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환경개선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역문화사업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06년 박물관 개관 이후 상설전시실 콘텐츠 개선에 대한 투자가 미비함, 전시실 기능 보강 및 주변 환경정비를 통하여 볼거리 있고 찾고 싶은 박물관으로 조성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국고개길 24
- 사업 기간 : 2020. 6. ~ 2021. 12.
- 예 산 액 : **1,500,000천원(특별교부세) 【기정예산 500,000천원 + 추경 중 1,000,000천원】**
- ※ 증액 사유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지역현안) 예산 교부
- 사 업 량 : 전시관 시설 개·보수 등 1식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전시실 등 관람객 안전 및 문화향유를 위한 전시관 리모델링 등 운영 개선
-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 제24조

제12조(설립과 운영)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충남역사박물관 조경 및 전시환경 개선사업 : 2,000,000천원 ○ 계단 및 주차장 리모델링 : 505,500천원 ○ 승강기 설치 : 361,500천원 ○ 조경환경 개선 : 533,000천원 ○ 전시관 개선 : 600,000천원	

※ 세부 산출 내역(안)

구 분	산출근거	금액(원)
1. 계단 및 주차장 리모델링		505,500,000
· 공사비		425,000,000
- 계단 리모델링	300㎡ × 800,000원	240,000,000
- 계단부 지형 조정	4,000㎡ × 30,000원	120,000,000
- 입구 사인제작	1식 × 30,000,000원	30,000,000
- 분수대 정비(조각상 제거 등)	1식 × 10,000,000원	10,000,000
- 배수로 정비 등	1식 × 25,000,000원	25,000,000
· 설계비(기본조사 및 실시)	425,000,000원 × 6%	25,500,000
· 감리비	425,000,000원 × 4%	17,000,000
· 철거비(폐기물처리 포함)	31,000,000원 × 1식	31,000,000
· 시설부대비	7,000,000원 × 1식	7,000,000
2. 승강기 설치		361,500,000
· 공사비	160,000,000원 × 2대	320,000,000
· 설계비(기본조사 및 실시)	320,000,000원 × 6%	19,200,000
· 감리비	320,000,000원 × 4%	12,800,000
· 철거비(폐기물처리 포함)	5,000,000원 × 1식	5,000,000
· 시설부대비	4,500,000원 × 1식	4,500,000
3. 조경 개선		533,000,000
· 공사비		450,000,000
- 지형정비 및 포장	8,000㎡ × 30,000원	240,000,000
- 배수로 정비	8,000㎡ × 5,000원	40,000,000
- 기존 수목 정비	30,000,000원 × 1식	30,000,000
- 조경 식재	140,000,000원 × 1식	140,000,000
· 설계비(기본조사 및 실시)	450,000,000원 × 6%	27,000,000
· 감리비	450,000,000원 × 4%	18,000,000
· 철거비(폐기물처리 포함)	32,000,000원 × 1식	32,000,000
· 시설부대비	6,000,000원 × 1식	6,000,000
4. 전시관 개선		600,000,000
· 공사비		510,000,000
- 조적 및 미장, 방수 공사	80,000,000원 × 1식	80,000,000
- 타일, 돌 공사	50,000,000원 × 1식	50,000,000
- 철공, 찬장 및 금속공사	90,000,000원 × 1식	90,000,000
- 창호 유리공사	50,000,000원 × 1식	50,000,000
- 수장, 철, 가구공사	160,000,000원 × 1식	160,000,000
- 기계설비 공사	50,000,000원 × 1식	50,000,000
- 전기통신 공사	30,000,000원 × 1식	30,000,000
· 설계비(기본조사 및 실시)	1,200,000,000원 × 6%	30,600,000
· 철거비(폐기물처리 포함)	50,000,000원 × 1식	50,000,000
· 시설부대비	7,000,000원 × 1식	9,4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0	0	1,000,000	2,000,000	1,000,000	0	
국 비	1,500,000	0	500,000	1,500,000	1,000,000		
도 비	0			0	0		
시군비	500,000		500,000	500,00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75%, 시비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조상연 (행) 3811

천안시 서북구 문화원 시설건립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천안서북구문화원건립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기존 문화원 시설 노후와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수요대비 공간의 부족으로 문화원 활동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쾌적한 문화활동 기대
- 사업 위치 : 천안시 성환읍 성월리 96-3번지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기정예산 492,000천원 - 추경 감 492,000천원】**
- ※ 감액 사유 : 서북구문화원 신축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
- 사 업 량 : 서북구 문화원 건립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천안시 서북구문화원 원사건립 설계 및 공사비
- 지원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제15조,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12.21.]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천안 서북구문화원 건립 : 0원 *서북구문화원 신축 부지 미확보에 따른 사업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230,000	0	-1,230,000	0	
국 비	0				0		
도 비	0		492,000	0	-492,000		
시군비	0		738,000	0	-738,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40%, 시비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은미 (행) 3814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2030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체부 「문화비전 2030」과 연계한 충남형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마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6. ~ 2020. 12.(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7,018천원(도비) 【기정예산 100,000천원 - 추경 감 12,982천원】**
- ※ 감액 사유 : 낙찰 차액 감액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문화예술(도서관)·유산·산업·관광, 건강체육 분야에 대한 종합 발전전략 수립
- 지원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제4항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30 충남형 문화체육관광 발전전략 수립 87,018천원 ○ 인건비 : 36,175천원 - 책임연구원 : 11,627천원 - 연구원 : 13,373천원 - 연구보조원 : 11,175천원 ○ 경 비 : 50,209천원 - 국내여비 : 2,490천원 - 회의비 및 설문조사비 등 : 34,000천원 - 인쇄비 : 8,769천원 - 소모품비 : 4,050천원 - 전산처리비 : 900천원 ○ 일반관리비 : 63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7,018	0	100,000	87,018	-12,982	0	
국 비	0				0		
도 비	87,018		100,000	87,018	-12,98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미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2020.4.7.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	2030문화비전TF	홍은아 (행) 2410	김영준 (행) 3807	유주연 (행) 3828

지방문화원 시설 건립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문화 진흥
	세부사업	지방문화원 시설건립 (전환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문화원 노후 시설 보강을 통한 지역민 이용 편의 제공
- 사업 위치 : 도내 문화원
- 사업 기간 : 2020. 12. ~ 2021. 12
- 예 산 액 : 492,000천원(도비)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중 492,000천원】
- ※ 증액 사유 : 도내문화원 시설 노후에 따른 원사 기능보강
- 사 업 량 : 지방문화원 리모델링 4개소 (천안 동남구, 서천, 홍성,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자치단체보조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도내 문화원 시설 기능보강(리모델링)
- 지원근거 :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및 제15조,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① 지방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의 개발·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1.]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0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방문화원 기능보강(전환사업) : 1,230,000천원 (도비492,000, 시군비738,000) ○ 천안동남구문화원 : 100,000천원(도비40,000, 시비60,000) - 외벽보수, 강당, 원사 보수공사 ○ 서천문화원 : 200,000천원(도비80,000, 군비120,000) - 석면제거 및 천장공사, 등기구, 강당개선공사 ○ 홍성문화원 : 430,000천원(도비172,000, 군비258,000) - 공연장 노후시설, 지하기계실, 화장실, 지반침하 보강공사 ○ 예산문화원 : 500,000천원(도비200,000, 군비300,000) - 엘리베이터, 공연장, 방수공사 및 소방안전공사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30,000	0	0	1,230,000	1,230,000	0	
국 비	0				0		
도 비	492,000			492,000	492,000		
시군비	738,000			738,000	738,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40%, 시군6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은미 (행) 3814

충남문화재단 운영비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충남문화재단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문화재단 직원 인건비 지급 및 사무실 운영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58, 3층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809,470천원** 【**기정예산 1,754,470천원 + 추경 중 55,000천원**】
 - ※ 증액 사유 : 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2020.1.1.일 3급 직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 사 업 량 : 직원 급여 및 제수당 지급 및 재단 1년 제반 운영 경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재단운영비 지원을 통한 문화기반 구축 및 도민 문화향유 지원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0조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

-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문화재단 운영 ○ 총액인건비 : 1,220,257천원 (기 1,165,257천원) ▷ 인건비 : 55,000천원 ○ 급여 : 50,040천원 · 직원(1명) : 50,040천원(월평균 : 4,170천원) ○ 제수당 : 1,680천원 · 정액급식비 : 1,680천원(월평균 140천원) ○ 퇴직급여충당금 : 3,280천원(통상임금 80%수준) ○ 행정사무경비 : 539,597천원 ○ 성과급 : 40,567천원 ○ 예비비 : 9,04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09,470	0	1,754,470	1,809,470	55,000	0	
국 비	0				0		
도 비	1,809,470		1,754,470	1,809,470	5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30,000	1,582,744	102,945	91.5%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19.8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이종하 (행) 3816

서해안비치국제뮤직페스타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충남문화재단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서해안 일대에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道대표 문화관광콘텐츠로 육성
- 사업 위치 : 만리포 해수욕장 외 2곳 (충남 태안군 소원면 모항리)
- 사업 기간 : 20.01.01.~20.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1,807천원 【기정예산 200,000천원 - 추경 감 198,193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 사 업 량 : 서해안 국제뮤직페스타 1회 (음악축제 / 2일)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재단법인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서해안 국제뮤직페스타 1회 (2일)
 - 만리포해수욕장 1회(2일), 천리포수목원 1회(2일), 신두리해안사구1회(2일) 음악공연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지원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재정지원)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 · 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2.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서해안비치국제뮤직페스타 : 1,807천원 ○ 여비 : 90천원 · 국내여비 30,000원 × 2명 × 1회 = 60천원 · 국내여비 10,000원 × 3명 × 1회 = 30천원 ○ 차량유지비 : 50천원 · 업무용 차량유류비 50,000원(단가)×1회 = 50천원 ○ 회의운영비 : 1,667천원 · 회의식비 : 249,000원 × 1식 = 249천원 · 회의식비 : 146,000원 × 1식 = 146천원 · 회의식비 : 220,000원 × 1식 = 220천원 · 회의다과비 : 51,840원 × 1식 = 52천원 ·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지급 : 250,000원 × 4명 × 1회 =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07	0	200,000	1,807	-198,193		
국 비	0				0		
도 비	1,807		200,000	1,807	-198,193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19.8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2410	정현웅 (행)3802	이종하 (행)3816

국제문화예술교류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충남문화재단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에 충남문화예술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양국 간 이해증진
- 사업 위치 : 동유럽(크로아티아)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371천원** 【기정예산 200,000천원 - 추경 감 198,193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취소
- 사 업 량 : 해외공연 2회, 교류워크숍 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 크로아티아 수도 등지에서 전통예술 거리공연 2회
 - ▶ 크로아티아 전통예술단체와의 교류워크숍 2회
 - 양국의 전통문화 체험 및 협업 방안에 대한 논의 등
- 지원근거 :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3조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국제문화교류 : 371천원 ○ 출장여비 : 371천원 · 3인 출장여비 지급 61,000원×3명×2회 =37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71	0	100,000	371	-99,629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371		100,000	371	-99,62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19.8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2410	정현웅 (행)3802	이종하 (행)3816

윤봉길 의사 뮤지컬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 강화
	세부사업	충남문화재단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대표 독립운동가인 윤봉길의사 재조명을 통한 도 대표 뮤지컬 콘텐츠 육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시·군 문예회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9천원(도비) 【기정예산 150,000천원 - 추경 감 149,741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취소
- 사 업 량 : 충청남도 문예회관2회, 예산군 문예회관2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재단
- 사업 내용 : 국내 공연 및 국비 공모 연계 추진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재정지원)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윤봉길 의사 뮤지컬 「위치」 공연 ○ 출장여비 : 259천원 · 뮤지컬 공연진행 실무협의 출장 = 133,400원 · 해외진출방안 자문 관련 출장 = 125,8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59	-	430,000	259	-429,741	-	-
국 비	-	-	30,000	-	-30,000	-	-
도 비	259	-	150,000	259	-149,741	-	-
시군비	-	-	150,000	-	-150,000	-	-
기 타	-	-	100,000	-	-100,000	-	-

* 보조율 : 국비 9%, 도비 34%, 시군비 34%, 기타 2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0	996,585	3,415	99.6%	-	국고보조금 50% 지방비부담금 50% (도 25% / 예산 2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19.8월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2410	정현웅 (행)3802	이종하 (행)3816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한국민속예술축제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민속예술의 발굴을 통한 보존, 전승 및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중 20년 출품작품 심사 후 1개 시군 확정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53,000천원(국비8,000, 도비45,000) 【기정예산 51,000천원 + 추경 중 2,000천원】**
- ※ 증액 사유 : 코로나19 방역비용 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한국민속예술축제 1팀(일반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한국민속예술축제 경연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민속예술축제 : 53,000천원 ○ 참가작품 연습 및 공연용품 구입, 방역비용 등 : 53,000 · 한국민속예술축제 1팀 선정 × 53,000 = 53,000(기금 8,000 도비 4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3,000	0	61,000	63,000	2,000	0	
국 비	8,000	0	6,000	8,000	2,000		기금
도 비	45,000	0	45,000	45,000	0		
시군비	10,000	0	10,000	10,000	0		

* 보조율 : 국비 9%, 도비 69%, 시군비 22%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67,000	67,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하늘 (행) 2412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참가지원(성립전)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한국민속예술축제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민속예술의 발굴을 통한 보존, 전승 및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중 20년 출품작품 심사 후 1개 시군 확정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000천원(국비6,000, 도비15,000) 【기정예산 19,000천원 + 추경 중 2,000천원】
- ※ 증액 사유 : 코로나19 방역비용 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1팀(청소년부)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청양군
- 사업 내용 :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경연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 21,000천원 ○ 참가작품 연습 및 공연물품 구입, 방역비용 등 : 21,000 · 한국민속예술축제 1팀 선정 × 21,000 = 21,000(기금 6,000 도비 15,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7,000	0	25,000	27,000	2,000	0	
국 비	6,000		4,000	6,000	2,000		기금
도 비	15,000	0	15,000	15,000	0		
시군비	6,000		6,000	6,000	0		

* 보조율 : 국비 16%, 도비 60%, 시군비 2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35,000	35,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하늘 (행) 2412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한국민속예술축제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민속예술 발굴을 통한 보존, 전승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속예술을 매개로 한 충남 민속예술축제의 정체성 강화(전국 시도 순서대로 개최, 20년 충남 개최 대상)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신규)
- 예 산 액 : **36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1,080,000천원 - 추경 감 720,000천원】**
※국비 직접지원 720,000천원
- 사 업 량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1식
※ 감액 사유 : 국비 직접지원에 따른 예산서 국비 삭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20년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 1,440,000천원(기금 720,000, 도비 360,000, 시비 360,000) ○ 한국민속예술축제 및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개최 : 1,440,000 - 행사개최비, 시상금, 시도참가팀 지원금 등 1,44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20,000	0	1,440,000	720,000	-720,000	0	
국 비	0	0	720,000	0	-720,000		기금
도 비	360,000	0	360,000	360,000	0		
시군비	360,000	0	360,000	360,000	0		

* 보조율 : 국비 50%(직접지원),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하늘 (행) 2412

천안흥타령춤축제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천안삼거리의 옛 정서인 흥을 춤으로 담아내며, 춤의 저변 확대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와 생활문화로서의 발전을 꾀함
 - 국내외 춤 경연을 통해 수준 높은 춤 공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시민들과 문화욕구 충족에 부합하고자 함
- 사업 위치 : 천안삼거리 공원 및 시내(신부동) 일원
- 사업 기간 : 2020. 4 ~ 12월(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도비) 【기정예산 300,000천원 - 추경 감 300,000천원】**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공식참가작 경연 6회, 초청공연 3회, 프린지 공연 16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시민들을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로서 함께하는 시민과 함께하는 축제 및 지역적 특색을 살려 신명나고 즐거운 흥이나는 축제 개최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천안흥타령축제 : 0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2,650,000	0	-2,650,000	0	
도 비	0		350,000	0	-350,000		
시군비	0		2,300,000	0	-2,300,000		

* 보조율 : 도비 13%, 시군비 8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50,000	2,582,731	167,269	93.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하늘 (행) 2412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청남도 지역문화 진흥 및 지역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11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
- 예 산 액 : 1,215,000천원(도비) 【기정예산 1,880,000천원 - 추경 감 66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예방 행사취소 및 시·군 예산 미확보 등
- 사 업 량 : 11개 시·군 지역문화예술행사 44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음악회, 지역문화예술행사 등 (68개 사업→ 44개 사업, 24개 사업 취소 등)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 : 2,484,000천원(도비 1,215,000, 시군비 1,269,000) ○ (도비) 1,880,000,000원(기정) - 665,000,000원(취소사업 등) = 1,215,000,000원 - 취소사업 : 8개 시·군 24개사업 665,000천원(붙임자료 참조) ※ 코로나19 예방 행사취소 및 시·군 예산 미확보, 보조금 중복으로 지원 불가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484,000	0	3,814,000	2,484,000	-1,330,000	0	
도 비	1,215,000		1,880,000	1,215,000	-665,000		
시군비	1,269,000		1,934,000	1,269,000	-665,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이상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59,500	2,699,500	60,000	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이은희 (행) 3817

□ 행사취소 등 보조금 감액 대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시/군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사유 등)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8개 시.군 24개 사업)		1,634,250	665,000	665,000	304,250	
천안시	찾아가는 산골음악회	100,000	40,000	40,000	20,000	천안시 예산 미확보
	전국장애인합창대회	100,000	40,000	40,000	20,000	중복지원
	만수사 산사음악회	50,000	20,000	20,000	10,000	행사취소(코로나19)
	천왕사 산사음악회	50,000	20,000	20,000	10,000	
	각원사 산사음악회	100,000	40,000	40,000	20,000	
공주시	청소년 영페스타	50,000	20,000	20,000	10,000	행사취소(코로나19)
아산시	송암사 단오미륵 문화제	80,000	32,000	32,000	16,000	행사취소(코로나19)
	전국난타경연대회	30,000	12,000	12,000	6,000	
	뷰티환타지쇼 (지역문화행사활성화사업 일부)	37,500	15,000	15,000	7,500	
	전통사찰산사음악회	64,000	25,000	25,000	14,000	
		트릭아트 조성사업	100,000	50,000	50,000	0
서산시	제8회 해미읍성 전국가요제	30,000	12,000	12,000	6,000	행사취소(코로나19)
	내포자연문화예술제	70,000	30,000	30,000	10,000	
	서광사 산사음악회	75,000	30,000	30,000	15,000	
	별천포 몽돌해수욕장 자연예술제	40,250	16,000	16,000	8,250	
		현음 소릿길을 찾아서	50,000	20,000	20,000	10,000
부여군	가림어울림음악회	20,000	8,000	8,000	4,000	행사취소(코로나19)
	한국서도협회 서예술 축전	62,500	25,000	25,000	12,500	
홍성군	전국 청소년 밴드 경연대회	75,000	30,000	30,000	15,000	홍성군 예산 미확보
	새봄맞이, 가을음악회	40,000	16,000	16,000	8,000	
	대하축제 풍물대회 지원	30,000	12,000	12,000	6,000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 전시회	37,500	15,000	15,000	7,500	
예산군	대한민국관악대축제	250,000	100,000	100,000	50,000	행사취소(코로나19)
	의좋은형제마을 문화역량강화지원	30,000	12,000	12,000	6,000	
태안군	홍주사 산사음악회	62,500	25,000	25,000	12,500	행사취소(코로나19)

트릭아트 조성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예술 진흥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특색있는 트릭아트를 조성을 통하여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 사업 위치 : 아산시 관내(추후 협의 지정)
- 사업 기간 : 2020.6.1. ~ 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000천원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중 50,000천원】**
- 사 업 량 : 트릭아트 조성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트릭아트 조성 1식
- 지원 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3조, 관광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아산시 트릭아트 조성사업 ○ 트릭아트 시설 조성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 AR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체험 프로그램 1식 × 50,000천원 = 50,000천원	
총 사업비	100,000천원(도비 50,000, 시군비 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100,000	100,000	0	
도 비	50,000		0	50,000	50,000		
시군비	50,000		0	50,000	50,00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이은희 (행) 3817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민속농악활성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민속농악 또는 국악연주 상설공연 지원으로 전통음악 활성화 및 지역알리기 효과
- 사업 위치 : 도내 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신규)
- 예 산 액 : **67,500천원(도비) 【기정예산 95,000천원 - 추경 감 27,500천원】**
- ※ 감액 사유 : 당초 4개 시·군 지원 예정이었으나 최종 3개 시·군 신청으로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3개 풍물예술단(국악연주단) 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아산시, 예산군
- 사업 내용 : 3개 풍물예술단 상설공연(주말 등) 관련 실비 지원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 : 135,000(도비 67,500, 시군비 67,500) · 교통비 200 * 36회 * 3개 단체 = 21,600 · 식 비 160 * 36회 * 3개 단체 = 17,280 · 악기 및 장비 임차비 20,000 * 3개 단체 = 60,000 · 홍보비 10,000 * 3개 단체 = 30,000 · 사무용품비 등 기타 제잡비 2,040 * 3개 단체 = 6,1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5,000	0	190,000	135,000	-55,0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도 비	67,500	0	95,000	67,500	-27,500	0	
시군비	67,500	0	95,000	67,500	-27,5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2019.10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하늘 (행) 2412

장항선셋축제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지역공연예술제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주민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서천군 장항읍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5,000천원(도비) 【기정예산 375,000천원 - 추경 감 300,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불가하여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축제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음악공연, 미술·연극단체 공연활동 지원 등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장항선셋축제 : 150,000천원 (도비75,000 시군비75,000) ○ 장항선셋축제 개최 : 150,000천원 - 음악부문 단체별(동아리 포함) 공연, 미술·연극단체 공연활동 지원 등 : 1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750,000	150,000	-600,000	0	
도 비	75,000	0	375,000	75,000	-300,000	0	
시군비	75,000	0	375,000	75,000	-300,0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하늘 (행) 2412

계룡군문화엑스포 공연 지원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역량강화
	세부사업	계룡군문화엑스포 공연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예술단체를 활용, 군문화엑스포를 문화예술 장으로 승화
- 사업 위치 : 계룡군문화엑스포 행사장 및 인근지역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신규)
- 예 산 액 : 10,000원(도비) 【기정예산 45,000천원 - 추경 감 3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각 협회별 공연 및 전시 1회 이상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사)한국예총 충남지회소속 8개 협회 및 민족예술인총연합회 충남지회
- 사업 내용 : 릴레이식, 계룡시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 예술행사 전개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시책은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계룡군문화엑스포 공연 지원 : 10,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 예산 변경사용 : 10,000천원 * 승인일자 : 20.09.28. 코로나19로 인해 크게 위축된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 문화예술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45,000	10,000	-35,000	0	신규
도 비	10,000	0	45,000	10,000	-35,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예술팀	홍은아 (행) 2410	정현웅 (행) 3802	하늘 (행) 2412

공공미술프로젝트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지역예술 역량강화
	세부사업	공공미술 프로젝트
	통 계 목	사무관리비(201-01)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일자리창출, 공간문화품격제고
- 사업 위치 : 충남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07—2021. 02 (신규사업)
- 예 산 액 : 5,360,700천원(국비4,982,000, 도비378,700)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중 5,360,000천원】
- ※ 증액 사유 :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 일자리 제공 및 주민 문화향유 증진
- 사 업 량 : 충청남도 15개 시군별 1개이상 프로젝트, 최소작가 37명 참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15개시군
- 사업 내용 : 공공미술작품 설치 및 운영관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공공미술프로젝트 총 사업비 : 6,228,00천원 (국비: 4,982,000, 도비: 378,700, 시군비867,300) ○ 도 자체 운영비 33,000천원 ○ 사업비 : 6,195,000천원 = 413,000천원 X 15개 시군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228,000	0	0	6,228,000	6,228,000	0	신규
국 비	4,982,000		0	4,982,000	4,982,000		국고보조금
도 비	378,000		0	378,700	378,700		
시군비	867,300		0	867,300	867,3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80%, 도비 6%, 시군비 1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	홍은아 (행) 2410	김영식 (행) 3801	김은희 (행) 2411

2021 세계문화산업 발전 진흥포럼 연구용역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통 계 목	출연금(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가능한 콘텐츠산업 정책방향 과제 도출 및 '로컬콘텐츠'의 허브로 충청남도 선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신규)
- 예 산 액 : 0원 **【기정예산 50,000천원 - 추정 감 50,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취소
- 사 업 량 : 학술연구 보고서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또는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 내용 : 제2의 한류문화 부흥과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국내·외 유명 산·관·학·연 등이 참여하는 「2021세계문화산업발전 진흥포럼」 및 「충남 선언」 관련 사전 연구용역 추진
- 지원근거 : 충청남도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제반 활성화 사업
5. 문화산업의 국내외 교류·협력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1 세계문화산업 발전 진흥포럼 연구용역 : 50,000천원 ○ 연구개발비 : 44,000천원 · 학술연구용역 1식 : 44,000천원 ○ 회의운영비 : 5,000천원 · 제안서 평가 : 200천원 x 7인 x 1회 = 1,400천원 · 전문가 자문 : 200천원 x 5인 x 2회 = 2,000천원 · 회의비 : 20천원 x 8인 x 10회 = 1,600천원 ○ 일반경비(여비) : 1,000천원 · 국내여비 : 50천원 x 2인 x 10회 = 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0,000	0	50,000	0	-5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50,000		50,000	0	-5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2019.10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홍성국제단편영화제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진흥
	세부사업	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제단편영화제 개최를 통한 도민 문화 향유 확대, 지역관광 및 경제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남 홍성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0. 5. ~ 2020. 12.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0원 **【기정예산 100,000천원 - 추경 감 100,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사업취소
- 사 업 량 : 홍성군 제3회 국제단편영화제 개최(4일 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개막식, 영화상영(홍성군 소재 영화관 상영), 영화장비 및 포스터 전시 등
- 지원근거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준> 홍성국제단편영화제 : 340,000천원(도비100,000, 시군비 240,000) - ○ 주무대 시설비 : 80,500천원 · 무대시설, 포토월 시설 ×1식 = 20,000천원 · 무대음향시스템 × 1식 = 13,000천원 · 무대 조명시스템 × 1식 = 7,500천원 · 레이저 시스템 × 1식 = 7,000천원 · 무대 led 시스템 6,000천원 × 2개 = 12,000천원 · 영상 자막 디자인 × 1식 = 3,000천원 · 특수효과(꽃가루, 에어샷 등) × 1식 = 2,000천원	

	· 발전차 2,000천원 × 2개 = 4,000천원 · 중계시스템(중계카메라 5, 지미짚 등) × 1식 = 12,000천원 ○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진행비 : 19,500천원 · 입체가상(VR) 현실 체험 10,000천원 × 1대 = 10,000천원 · 카메라 및 조명장비 전시 × 1식 = 9,500천원 ○ 시상금 및 심사 진행비 : 69,000천원 · 트로피 제작 150천원 × 20개 = 3,000천원 · 수상자 상금 12개 부문 = 34,000천원 · 심사위원 보상비(예심 850편*10천원/본심위원 10명*1,000천원 /위원장 예심본심 2회*5,000천원) = 28,500천원 · 심사위원 식대비 및 대관료 × 1식 = 3,500천원 ○ 배우 등 출연료 : 112,000천원 · MC 출연료 × 1식 = 12,000천원 · 영화배우 출연료 × 1식 = 50,000천원 · 초청가수 출연료 × 1식 = 50,000천원 ○ 영화제 행사운영비 : 59,000천원 · 의자, 탁자, 텐트 등 임차비 행정 × 1식 = 10,000천원 · 포스터, 팸플렛, 현수막 등 홍보비 × 1식 = 9,000천원 · 물품구입 등 기타 행사 운영비 : 40,000천원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40,000	0	340,000	0	-340,000	0	
국 비	0				0		
도 비	100,000		100,000	0	-100,000		
시군비	240,000		240,000	0	-24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	10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김지연 (행) 2413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폐 산업시설 유휴공간 리모델링
 - 판교 심동굴을 활용한 와인 생산과 온갖 조형물, 다채로운 불빛 등 힐링 장소로 변경
- 사업 위치 :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 일원
- 사업 기간 : 2019.1.1. ~ 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 **【기정예산 970,000천원 - 추경 감 970,000천원】**
 - ※ 감액 사유 : 지역 여건 및 수요 등 고려 서천군 사업포기서 제출('20.6.11.)
- 사 업 량 : 폐철도 1개소(건축면적 : 폭 4m, 길이 1,027m)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천군
- 사업 내용 : 폐철도(금암터널)를 리모델링하여 체험공간 조성(와인, 식초, 도토리 만들기 등)
- 지원근거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심동마을 열차터널) : 1,940,000천원(국비 970,000 시비 970,000) ○ 자본보조 : 1,590,000천원 · 공사비 : 1,590,000 × 1식 = 1,590,000 ○ 경상보조 : 350,000천원 · 인력지원 : 100,000 × 1식 = 100,000 · 운영콘텐츠 : 250,000 × 1식 = 25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000,000	3,060,000	1,940,000	0	-1,940,000	0	
국 비	2,500,000	1,530,000	970,000	0	-970,000		균특
도 비	0				0		
시군비	2,500,000	1,530,000	970,000	0	-970,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30,000	1,53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조인상 (행) 3823

천안 문화도시 운영	정책사업	지역문화 활성화
	단위사업	문화산업 진흥
	세부사업	문화도시 조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민의 문화 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4.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85,710천원(도비) 【추경 중 385,710천원】**
 - ※ 증액 사유 : 법정문화도시 지정('19.12.30.), 충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승인('20.6.26.) 후 국비 (1,285,710천원) 대응 도비 매칭
- 사업 량 :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1) 문화적 도시재생 : 문화적 도시재생 프로젝트(시민프로젝트, 리빙랩 프로젝트), 문화독립 상상플랜, 문화브릿지 조성, 공간스위치 운영
 - 2) 글로벌 브랜드 구축 : 문화독립 콘텐츠 개발지원, 문화도시 아카이빙, 문화독립 도시 브랜드 개발, 문화도시 글로벌 프로젝트
 - 3)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 문화도시 위킹그룹 운영, 문화창업지원, 문화독립 비즈니스 활동 지원
 - 4) 문화도시센터 운영 : 인력 7인 운영, 센터 임차 및 운영(공유문화공간, 버스킹카 등)
- 지원근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 문화산업 · 관광 · 전통 · 역사 · 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천안문화도시운영 : 2,722,000천원 [국비 : 1,285,710] ○ 민간사업지원 : 880,000 · 문화적 도시재생 시민제안 공모 : 300,000 - 시민자율형 문화활동 프로젝트 : $(7,000 \times 10\text{건}) + (3,000 \times 10\text{건}) = 100,000$ - 생활밀착형 리빙랩 프로젝트 : $50,000 \times 4\text{건} = 200,000$ · 문화독립 콘텐츠 개발 : $50,000 \times 4\text{건} = 200,000$ · 문화도시 글로벌 프로젝트 : $30,000 \times 3\text{건} = 90,000$ · 공간 스위치(민간 공간의 문화적 활용 유도) : $20,000 \times 5\text{건} = 100,000$ · 문화도시 워킹그룹 운영 : $(30,000 \times 2\text{건}) + (30,000 \times 1\text{건}) = 90,000$ · 문화독립 비즈니스 지원 : 콘텐츠 리디자인 5건(50,000), 특허실험 프로젝트(50,000) ○ 위탁사업비 : 365,710 · 기존 프로젝트 : $20,000 \times 5\text{건} = 100,000$ · 상상아카데미 운영 : 50,000 · 문화도시 브랜드 시각 디자인 : 15,710 · 문화창업지원 위탁 운영 : 100,000 · 문화도시 스토리발굴단 및 기록집 제작 : 100,000 ○ 일반수용비 : 40,000 · 문화도시 상생협의체 : 30,000 · 전문가활용비 : 10,000 [도비 : 385,710천원] ○ 위탁사업비 (문화브릿지 사업) : 385,710 [시비 : 1,050,580천원] ○ 위탁사업비 : 418,580 · 문화브릿지 사업 : 414,290 · 문화도시 브랜드 시각 디자인 : 4,290 ○ 민간사업지원 (문화독립 콘텐츠 개발) : 150,000 ○ 문화도시 센터운영(6명 인건비 및 운영비) : 48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750,000	0	2,336,290	2,722,000	385,710	17,028,000	신규
국 비	9,500,000	0	1,285,710	1,285,710	0	8,214,290	
도 비	2,850,000	0	0	385,710	385,710	2,464,290	
시군비	7,400,000	0	1,050,580	1,050,580	0	6,349,42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20.6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	홍은아 (행) 2410	강병락 (행) 3803	김지연 (행) 2413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직무연찬회 개최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건립및운영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공립·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장 및 학예사 합동 업무연찬을 통해 자립역량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천원(도비) 【기정예산 9,000천원 - 추경 감 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찬회 계획 변경(1박 2일 →당일)
- 사 업 량 : 53개관(박물관 44(공립 26, 사립 18), 미술관 9(공립 2, 사립 7))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립·사립 박물관(미술)관 관장 및 학예사 직무연찬회 개최
-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제1항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4,000	
	○ 회의자료 (10천원×100부 = 1,000천원) = 1,000	
	○ 강사료(원고료포함) (500,000원×1명 = 500천원) = 500	
	○ 회의실 대관료 = 1,000	
	○ 기타경비 = 1,5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00	0	9,000	4,000	-5,000	0	계속
도 비	4,000	0	9,000	4,000	-5,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9,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10	김기남 (행) 3804	김승섭 (행) 3821

도립미술관 운영방안 연구용역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확충및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건립및운영지원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립미술관의 건립목적과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운영방안 및 각 실별 규모 산정을 위한 건축 스페이스 프로그램 구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예공원 내 문화시설 부지(충남 홍성군 홍북읍 887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23,100천원 【기정예산 130,000천원 - 추정 감 6,900천원】
- ※ 감액 사유 : 용역 계약 금액 이외의 잔액 정리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립미술관의 건립목적 및 환경여건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운영방안 마련
도립미술관 프로그램 기획 방향 마련 및 콘텐츠 개발
운영방안에 따른 각 실별 규모 산정을 위한 건축 스페이스 프로그램 마련
- 지원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4조(문화산업의 육성·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의 육성시책과 융자의 알선, 기술 도입과 보급에 관한 지원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123,100	
	○ 인건비 = 84,649 - 책임연구원 : 5,168천원, 연구원 : 66,568천원, 연구보조원 : 12,913천원	
	○ 경 비 = 12,290 - 국내여비 : 3,200천원, 인쇄비 : 5,050천원, 조사회의비 등 : 3,200천원, 교통·통신비 : 840천원	
	○ 기타(이윤 및 부가가치세 등) = 26,161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3,100	0	130,000	123,100	-6,9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23,100		130,000	123,100	-6,9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당없음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대 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2019.10.2.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건립팀	홍은아 (행) 2410	김두환 (행) 3805	윤후영 (행) 3819

사립 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사업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건립및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 산출 근거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13,600천원 × 25개소 ≒ 338,940천원 = 338,940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13,600천원 × 25개소 ≒ 338,940천원

$$= 338,94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38,940	0	380,000	338,940	-41,060	0	계속
도 비	169,470	0	190,000	169,470	-20,530	0	
시군비	169,470	0	190,000	169,470	-20,53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195,005	4,995	97.5%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10	김기남 (행) 3804	김승섭 (행) 3821

도립미술관 설계공모 관리용역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통 계 목	시설비 (4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역량있는 국내·외 건축가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전문적 지명공고 관리·운영 필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예공원 내 문화시설 부지(충남 홍성군 홍북읍 887일원)
- 사업 기간 : 2020년 ~ 2021년(다년도 사업)
- 예 산 액 : 908,000천원 【기정예산 1,000,000천원 - 추정 감 92,000천원】
- ※ 감액 사유 : 용역 계약 금액 이외의 잔액 정리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내포신도시 문화시설지구 내 도립 미술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 지명 설계공모 관리
- 지원근거 :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4조(설계공모의 종류) 및 제5조(설계공모 등의 시행 공고)

건축기본법 제22조(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건축디자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건축디자인을 개선하는 개발·정비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908,000	
	○ 설계공모관리 대행비 추진비용 - 인건비 50,622천원, 심사 및 자문비 38,731천원, 현장 촬영 및 홍보비 15,000 천원, 작품접수운영 및 지원 11,400천원, 시상식 및 전시 16,500천원, 번역비 23,000천원, 웹사이트 및 디자인 35,000천원, 보고서 및 성과품 등 10,010천원 = 200,263	
	○ 참가보상비	= 600,000
	○ 일반관리비 및 이윤	= 107,73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08,000	0	1,000,000	908,000	-92,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908,000		1,000,000	908,000	-92,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19~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10	김두환 (행) 3805	신태순 (행) 3825

도 문예회관 무대장치 보수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확충 및 운영
	세부사업	문화시설건립및운영지원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된 문예회관의 기능 보강 및 공연장 안전성 확보
- 사업 위치 : 예산군(충청남도 문예회관)
- 사업 기간 : 2020. 6.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782천원(도비) 【기정예산 22,000천원 - 추경 감 2,218천원】**
- ※ 감액 사유 : 무대장치 보수 완료 이후 계약 잔액 반납
- 사 업 량 : 무대장치 보수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사용연수에 따른 시설 노후 보수(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 지원근거 : 공연법 제12조

공연법 제12조

② 공연장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19,782	
	○ 무대보수공사 1식 = 19,78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9,782	0	22,000	19,782	-2,218	0	계속
도 비	19,782	0	22,000	19,782	-2,218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10	김기남 (행) 3804	황관석 (행) 3815

시설장비유지비 등	정책사업	백제 역사테마파크 조성
	단위사업	백제문화단지 운영
	세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문화단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등
- 사업 위치 : 백제문화단지(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150,000천원 - 추경 감 80,000천원】
- 사 업 량 : 소규모 수선, 공과금 납부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백제문화단지내 건물 및 소규모 기계장비, 비품구입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및 공과금 납부
- 지원근거 : 해당없음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운영비 : 70,000천원 ○ 시설장비유지비 등 : 50,000천원 · 각종 기계노후로 인한 소규모 기계수리비 및 장비 수선비 ·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 수선비등 ·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기계구입비등 · 단지내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등 ○ 각종 공공요금 및 무인경비, 부담금 등 : 10,000천원 ○ 안전관리(전기,소방,위험물 등) 대행수수료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0,000	0	150,000	70,000	-8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70,000		150,000	70,000	-8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26,380	213,556	212,824	5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팀	홍은아 (행) 2410	이해문 (행) 3806	장정선 (행) 7713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급여 등)	정책사업	백제 역사테마파크 조성
	단위사업	백제문화단지 운영
	세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통 계 목	사회복무요원보상금 (301-08)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단지 방문객을 대상으로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소 운영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 급여지급
- 사업 위치 : 백제문화단지(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천원(도비) 【기정예산 17,000천원 - 추경 감 16,000천원】
 - ※ 감액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배치종료
- 사 업 량 : 사회복무요원(1명) 급여 지급(2개월)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민간위탁 시행 이후 수탁사측 요청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인력 지원 방식
 - 유모차 및 휠체어 대여소 운영 지원 사회복무요원 급여
- 지원근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병무청 훈령)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

① 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별표 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기관의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 의무복무기간에서 영 제92조의2에 따라 산출된 보충역 복무기간을 뺀 기간을 보수산정의 기준기간에 합산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회복무요원 보상금(급여) : 1,000천원 ○ 급 여 : 400,000원 × 1명 × 2개월 = 800천원 ○ 중식비 : 75,000원 × 1명 × 2개월 = 150천원 ○ 교통비 : 25,000원 × 1명 × 2개월 = 50천원 ※ 2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배치종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	0	17,000	1,000	-16,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000		17,000	1,000	-16,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26,380	213,556	212,824	5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팀	홍은아 (행) 2410	이해문 (행) 3806	장정선 (행) 7713

문화관 유물 및 사비성 전시물 관리	정책사업	백제역사테마파크조성
	단위사업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세부사업	문화관 시설물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역사문화관 소장·전시 유물 및 사비성 전시물 관리
- 사업 위치 :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기정예산 90,000천원 - 추경 감 6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발굴지연 및 국가귀속 문화재 미인수로 인한 감액
- 사 업 량 : 전시물 유지 보수 2회, 수장고 물품 구입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백제역사문화관 및 사비성 전시물 4,605점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43조(유물의 관리)

- 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에 대해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유물의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유물의 관리 등)

- ② 도지사는 대여, 이관,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문화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무관리비 : 25,000천원 ○ 문화관 유물 및 사비성 전시물 관리 · 백제역사문화관 및 사비성 전시물 관리 : 2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5,000	0	90,000	25,000	-65,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5,000		90,000	25,000	-6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5,000	88,607	46,393	6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팀	홍은아 (행) 2410	이해문 (행) 3806	이강복 (행) 7712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백제역사테마파크조성
	단위사업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세부사업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통 계 목	일반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역사문화관 특별전시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백제역사문화 홍보 및 가치 제고
- 사업 위치 :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도비) **【기정예산 27,000천원 - 추경 감 27,000천원】**
 - ※ 감액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기획전 개최 취소
- 사 업 량 : 특별기획전(1회)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전시도록 및 브로슈어 제작, 설계, 홍보 및 체험교재 제작 등
- 지원근거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43조(유물의 관리)

- 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에 대해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유물의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유물의 관리 등)

- ② 도지사는 대여, 이관,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문화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기획전 개최 취소 ※ 2019년 특별기획전 연장운영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27,000	0	-27,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27,000	0	-27,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	19,360	25,640	4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팀	홍은아 (행) 2410	이해문 (행) 3806	이강복 (행) 7712

□ 연도별 특별기획전시전 개최 현황

○ 1. 2006년부터 현재까지 총 15회 개최

년도	주 제	내 용
2006년	「유리원판 사진으로 보는 부여」	일제강점기 부여의 유물·유적 생활상을 소개하는 사진전
2007년	「名品, 백제디자인을 만나다」	백제문양을 현대적으로 응용한 다양한 문화콘텐츠 제작·전시
2008년	「흙, 자연으로부터의 확산」	충청남도청년도예가협회전
2009년	「백제百濟, 마한馬韓을 담다」	백제토기특별전
2010년	「삶, 꽃이 되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특별전
2011년	「馬韓, 탕정에서 잠들다」	아산 탕정 마한분묘유적 유물전
2012년	『百濟의 刀』	칠지도 및 무령왕릉 환두대도 등 8점
2013년	『길두리 갑주, 발굴에서 복원까지』	고흥 길두리 출토 갑주(갑옷과 투구)의 복원과정
2014년	「백제百濟, 그 찬란한 빛의 기록」	백제역사유적지구 및 한국의 세계문화유산 사진전
	『백제 금속기술, 그 화려한 부활』	백제유적 출토 고대 금속유물 및 복원품
2015년	『나성羅城, 사비(泗水)백제를 품다』	나성유적 출토 유물 및 발굴현황 소개
2016년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지구, 산책』	백제역사유적지구 8개 유적의 유물, 모형 전시
	『좋은 님, 금신 신고 가시옵소서』 - 백제 금동신발 -	금동신발 및 금동관모, 은제관식 등 전시
2018년	일본으로 전해진 백제 금동관·금동신발 문화	14점(금동신발 5점, 금동관모 6점, 금제장식 등)
2019년	장식대도 백제의 미	무령왕릉 출토 환두대도 및 칠지도 등 백제의 장식대도 전시

전시공사 및 전시보조물 제작 설치	정책사업	백제역사테마파크조성
	단위사업	백제역사문화관 운영
	세부사업	특별기획전 및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
	통 계 목	행사관련시설비 (4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특별기획전 개최를 통한 백제 역사 문화의 우수성의 홍보와 역사적 가치의 재조명으로 백제역사문화관의 위상 재고
- 사업 위치 :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455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원(도비) 【기정예산 60,000천원 - 추경 감 60,000천원】
 - ※ 감액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기획전 개최 취소
- 사 업 량 : 특별전 개최(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특별기획전시실 전시 공사 및 전시보조물 제작 설치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제43조(유물의 관리)

- ① 도지사는 소장 유물에 대해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당하지 아니하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유물의 잃어버림·훼손 또는 도난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유물의 관리 등)

- ② 도지사는 대여, 이관, 위탁,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수입되는 유물은 문화관 유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며, 이 경우 보험의 가입 및 특수보관시설 설치 등을 요구받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에 응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전시공사 및 전시보조물 제작설치(행사관련 시설비) ※ 코로나19로 인한 특별기획전 개최 취소 ※ 2019년 특별기획전 연장운영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60,000	0	-6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60,000	0	-6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6,000	19,000	17,000	5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백제문화단지팀	홍은아 (행) 2410	이해문 (행) 3806	이강복 (행) 7712

문 화 유 산 과

문화유산과

1. 무형문화재 보존회 지원	85
2.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87
3.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89
4. 문화재위원회 운영	91
5. 문화재돌봄사업	93
6. 지방전통사찰 긴급보수	95
7. 바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97
8. 2020년 긴급발굴지원사업(성립전)	99
9.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성립전)	101
10.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103
11.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105
12.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107

무형문화재 보존회 지원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원형 보존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무형문화재연합회의 공개행사 참관(견학) 지원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및 보존기반 마련
- 사업 위치 : 우리 도 또는 타 시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등
- 사업 기간 : 2020. 1. 1. ~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본예산 6,000천원 - 추경 감 6,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집행 불가
- 사 업 량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관(견학)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무형문화재연합보존회
- 사업 내용 : 우리 도 또는 타 시도 무형문화재의 공개행사 참관(견학)
- 지원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전승지원 등)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외에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관 사업비 : 6,000 천원(도비) ○ 충청남도무형문화재연합보존회의 공개행사 참관(견학) 1회 <변경>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참관 사업비 : 0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6,000	0	-6,000	0	계속
국 비			0				
도 비	0		6,000	0	-6,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0	6,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오인균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
	세부사업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통 계 목	연구용역비 (2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보존관리로 원형변질과 전승단절 예방
- 사업 위치 : 7개 시·군(공주, 보령, 논산, 당진, 서천, 예산, 홍성)
- 사업 기간 : 2020. 1. ~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40,000천원 【본예산 270,000천원 - 추경 감 30,000천원】
- ※ 감액 사유 : 전자 입찰 계약에 따른 차액 발생
- 사 업 량 : 무형문화재 기록도서·영상기록물 4종목 및 모니터링 8종목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무형문화재 기록도서·영상기록물 제작 및 모니터링
- 지원근거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제2항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조사 및 기록화)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분포현황, 전승실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이를 녹음·사진촬영·영상녹화·속기 등의 방법으로 관련 기록을 수집·작성하고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무형문화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조사, 관련 기록의 수집 및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형문화재 기록도서·영상기록물 4종목 및 모니터링 8종목 : 240,000천원 ○ 무형문화재 기록도서·영상기록물 4종목 및 모니터링 8종목 1식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40,000	0	270,000	240,000	-30,000	0	계속
국 비			0				
도 비	240,000		270,000	240,00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19,900	119,9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오인균 (행) 2450	윤상임 (행) 3904	이계만 (행) 3914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훼손되어 가는 전통문화 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보수 및 복원정비
- 사업 위치 : 13개 시군(계룡, 청양 제외)
- 사업 기간 : 2020. 1. ~ 12.(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0,073,528천원 【기정예산 41,382,528천원 - 추경 감 1,309,000천원】
※ 감액 사유 : 문화재청 사업예산 변경통지에 따른 예산액 조정
- 사 업 량 : 국가지정문화재 119개소 보수정비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홍성, 예산, 태안)
- 사업 내용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 및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1조(보조금)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그 문화재를 관리할 때 필요한 경비
2. 제4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경비
3.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외에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 47,190,387천원(국비 32,956,670 도비 7,116,858 시군비 7,116,859) ○ 발굴조사, 토지매입, 성곽보수, 건물보수, 잡목제거 등 13개 시군 119개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7,190,387	0	48,730,387	47,190,387	-1,540,000	0	계속
국 비	32,956,670		34,034,670	32,956,670	-1,078,000		국고
도 비	7,116,858		7,347,858	7,116,858	-231,000		
시군비	7,116,859		7,347,859	7,116,859	-231,0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707,125	31,707,125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오인균 (행) 2450	나윤주 (행) 3902	맹주철 (행) 3915

문화재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문화재위원회 관리
	통 계 목	일반운영비 (201-01)

□ 사업개요

- 사 업 목 적 : 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사·심의
- 사 업 위 치 : 15개 시군
- 사 업 기 간 : 2020. 1. ~ 12.
- 예 산 액 : **77,500천원** 【본예산 63,000천원 + 추경 중 14,500천원】
- 사 업 량 : 문화재위원회 운영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 업 내 용 : 문화재 지정·해제 및 현상변경 허가, 문화재 보존관리 자문 및 사업선정심의 등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71조

문화재보호법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 ① 시·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위원회 운영 : 14,500(도비) ○ 문화재위원회 : 4회(무형분과 1회, 부동산 분과2회, 도난문화재 회수 위원회 1회) ×2,500천원 =10,000천원 ○ 현지조사 수당: 3명×10회×150천원=4,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7,500	0	63,000	77,500	14,500	0	계속
국 비	0		0	0	00		
도 비	77,500		63,000	77,500	14,5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4,800	64,347	453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오 인 균 (행) 2450	나 윤 주 (행) 3902	김 성 수 (행) 2452

문화재돌봄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재 훼손에 대한 초기대응으로 보존관리 강화 및 상시 관리를 통한 관람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0. 1. ~ 12.
- 예산 액 : **2,496,674천원** 【본예산 2,483,150천원 + 추경 중 13,524천원】
- ※ 증액 사유 : 문화재청 사업예산 변경통지에 따른 예산액 조정
- 사업 량 : 도내 문화재 802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문화유산,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내용 : 문화재 모니터링, 경미수리, 일상관리 등
- 지원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5조, 제34조, 문화재운용규정 제462호

문화재보호법 제15조(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 등)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 ①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문화재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문화재가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재 돌봄사업 : 2,496,674(국비 1,248,337, 도비 1,248,337) ○ 문화재 모니터링, 경미수리, 잡초제거 등 일상관리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496,674	0	2,483,150	2,496,674	13,524	0	계속
국 비	1,248,337		1,241,575	1,248,337	6,762		기금
도 비	1,248,337		1,241,575	1,248,337	6,762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90,000	2,29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오 인 균 (행) 2450	나 윤 주 (행) 3902	황 석 현 (행) 3912

지방전통사찰 긴급 보수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정문화재보존관리
	세부사업	지방전통사찰 보수
	통 계 목	자차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전통사찰의 재난 상황 등으로 인한 긴급한 보수·복원 및 정비
- 사업 위치 : 도내 전통사찰
- 사업 기간 : 2020. 1. ~ 12.
- 예산 액 : **70,000천원 【본예산 95,000천원 - 추경 감 25,000천원】**
 - ※ 감액 사유 : 전통사찰 긴급보수 사업 잔여액 반납
- 사업 량 : 도내 전통사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장, 군수
- 사업 내용 : 전통사찰 내의 건물 등에 대하여 노후, 재난 등으로 붕괴, 파손되어 시급한 복구의 필요성이 있는 사찰에 대한 긴급보수 지원
- 지원 근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보존·관리·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전통사찰 긴급 보수 : 175,000(도비 70,000, 시군비 70,000, 기타 35,000) ○ 전통사찰 긴급보수비 지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75,000		237,500	175,000	-62,5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70,000		95,000	70,000	-25,000		
시군비	70,000		95,000	70,000	-25,000		
기 타	35,000		47,500	35,000	-12,50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50,000	-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오 인 균 (행) 2450	나 윤 주 (행) 3902	황 석 현 (행) 3912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지방문화창달
	세부사업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통 계 목	연구개발비 (307-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비림공원 조성 연구용역을 통한 문화유산 계승보존 및 지역경제 진흥
- 사업 위치 : 국내외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 예 산 액 : 140,986천원 【기정예산 150,000천원 - 추경 감 9.014천원】
※ 감액 사유 : 전자 입찰 계약에 따른 차액 발생
- 사 업 량 : 비림공원 조사 연구용역
- 사업시행방법 :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비림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지 원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4조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①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비림공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 연구용역 : 140,986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140,986	9,014	0	계속
국 비							
도 비			150,000	140,986	9,014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오 인 균 (행) 2450	김 기 택 (행) 3901	임 경 호 (행) 3916

2020년 긴급발굴지원 사업(성립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문화유적의 정비개발 및 활용
	세부사업	2020년 긴급발굴조사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훼손 우려가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긴급 발굴 조사
- 사업 위치 : 충남 서산시 어송리 정자동사지
- 사업 기간 : 2020. 9. 1. ~ 2020. 12. 31 (단년도 사업, 신규사업)
- 예 산 액 : 40,000천원 【본예산 0 천원 + 추경 중 40,000천원】 (성립전)
 - ※ 증액 사유 : 매장문화재 훼손유적 발생
- 사 업 량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서산시
- 사업 내용 : 서산 어송리 정자동사지 관련 유적에 대한 긴급 발굴조사
- 지원근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시행령 제31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매장문화재의 기록 작성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확인된 매장문화재의 기록을 작성·유지하고, 그 포장된 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매장문화재의 보호 방안)

① 국가는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지역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조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사태, 도굴 및 유물 발견 등으로 훼손의 우려가 큰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2. 보호·관리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20년 긴급발조사 지원 사업 : 40,000천원 ○ 서산 어송리 정자동사지 관련 유적 발굴조사 1식(시굴 1,224㎡, 정밀 발굴 12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000	0	0	40,000	40,000	0	신규
국 비	40,000		0	40,000	40,000		국고,기금,균특, 특교,소방 등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오인균 (행) 2450	윤상임 (행) 3904	이계만 (행) 3914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성립전)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08-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내포 천주교 유적군 세계유산 등재
- 사업 위치 : 도내(아산시, 서산시, 당진시, 홍성군, 예산군 등)
- 사업 기간 : 2020. 9 ~ 2021. 9
- 예산액 : 100,000천원 【본예산 0 추경 + 100,000천원】 성립전(국비 50,000천원)
※ 증액 사유 : 이코모스 사전자문 대상 선정에 따른 국비교부
- 사업량 : 잠정목록 연구지원 1식
- 사업시행방법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 사업시행주체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사업 내용 : 내포 천주교 유적군 영문자료 제출, 화상회의, 현지실사, 잠정목록 연구 등
- 지원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② 문화재청장은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이 조에서 "세계유산등"이라 한다)를 비롯한 인류 문화재의 보존과 문화재의 국외 선양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세계유산 잠정목록 연구지원 : 100,000천원(국비 50,000, 도비 50,000) - 이코모스 사전자문 대응 등 : 내포 천주교 유적군 영문자료 제출, 국제 화상회의, 이코모스 전문가 내포 현지 실사, 잠정목록 연구사업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0		0	100,000	100,000	0	
국 비	50,000		0	50,000	50,000		
도 비	50,000		0	50,000	50,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성립전 국비 50,000천원)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전략팀	오 인 균 (행) 2450	김 기 택 (행) 3901	임 경 호 (행) 3916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	정책사업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세부사업	세계유산 보존관리(시군자본)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역사유적지구의 문화재 발굴조사, 보수 정비로 세계유산 보존 및 가치 제고
- 사업 위치 : 공주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부여 능산리 고분군·관북리 유적·나성·부소산성·정림사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3,259,665천원** 【**본예산 28,930,357천원 - 추경 감 5,670,692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재정확보로 인한 국비삭감
- 사 업 량 : 백제역사유적지구 6개소 보존·관리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업 내용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수정비, 통합방범시스템 운영 및 관리, 관람환경개선 등
- 지원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19조제3항,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문화재보호법

제19조(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호)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계유산등에 대하여는 등재된 날부터 국가지정문화재에 준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하여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경비보조 등) ① 도지사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관리 사업 : 27,364,330(국비 : 19,155,000, 도비 : 4,104,665, 시군비 : 4,104,665) - 공주 공산성·송산리 고분군 · 성벽 등 보수정비, 탐방로 정비, 방범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 부여 정림사지·능산리 고분군·관북리 유적·나성·부소산성 · 발굴조사, 성곽 정비, 보호각 설치, 방범시스템 운영 및 관리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7,364,330	0	34,035,714	27,364,330	-6,671,384	0	계속
국 비	19,155,000		23,825,000	19,155,000	-4,670,000		
도 비	4,104,665		5,105,357	4,104,665	-1,000,692		
시군비	4,104,665		5,105,357	4,104,665	-1,000,692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744,571	21,744,571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오인균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정책사업	문화유산의체계적 보존전승
	단위사업	사회단체육성지원
	세부사업	사회단체육성지원
	통 계 목	민간이전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재 보존·수리기능 전승 개발과 기능인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전통작품 관람기회 제공
- 사업 위치 : 도내 선정
- 사업 기간 : 2020. 1. . ~ 12. 31.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본예산 12,000천원 - 추경 감 12,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집행 불가
- 사 업 량 : 기능인 작품 80여점 전시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재기능인협회충남대전지회
- 사업 내용 : 문화재기능인 작품 전시 및 제작시연, 체험행사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33조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33조(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도지사는 문화재의 보호·보존·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 12,000천원(도비) ○ 개막식 행사(앰프, 의자 등 임차) : 3,500,000원×1식=3,500천원 ○ 도록 제작 및 우편발송 : 50부×1식=4,100천원 ○ 홍보물 제작 : 2,000원×1500부=3,000천원 ○ 현수막, 배너 제작 : 50,000원×10개 = 500천원 ○ 초대장 제작 : 1,000원×500매=500천원 ○ 우편료 : 400원×500매=200천원 ○ 장비(지게차) 임차 : 100,000원×2일=200천원 <변경> ■ 문화재기능인협회 작품전시회 : 0 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2,000	0	-12,000	0	계속
국 비			0				
도 비	0		12,000	0	-12,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000	12,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유산보존팀	오인균 (행) 2450	윤상임 (행) 3904	권재용 (행) 2454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이자	정책사업	재무활동
	단위사업	보존지출
	세부사업	보조사업 반환금
	통 계 목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고보조사업 완료에 따른 후속 조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19. 1. ~ 12.
- 예 산 액 : **13,709천원 【기정예산 334천원 추경 + 13,375천원】**
- 사 업 량 :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등 3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시군
- 사업 내용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등 국고보조금 이자반납
- 지원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 2019년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 339,960원 ○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총액)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 13,047,880원 ○ 2019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 320,390원	국고보조금 통장 보통예금 금리 : 0.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709	0	334	13,709	13,375	0	계속
국 비					0		
도 비	13,709		334	13,709	13,375		
시군비	0		0		0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문화재관리팀	오 인 균 (행) 2450	나 윤 주 (행) 3902	황 석 헌 (행) 3912

체 육 진 흥 과

체 육진 흥 과

1.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보험료 등	113
2.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전세)	115
3.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월세)	117
4. 체육지도자 연수비	119
5. 4S정책아카데미 운영	121
6. 4S정책아카데미 참석자 실비보상	123
7.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125
8. 2020충청남도체육대회 지원	128
9. 회원종목단체 육성	130
10.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133
11. 행복드림 생활체육교실 운영	135
12. 체육진흥 및 국제교류 지원	137
13. 2020충청남도민체육대회 개최 지원(당진)	140
14. 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142

15.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144
16.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146
17. 유관순마라톤대회 지원	148
18. 백제공주마라톤대회 지원	150
19.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52
20.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 보강	154
21. 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성립전)	156
22. 국민체육센터건립	158
23.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 이자액 반환금	160
24. 2019년도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162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보험료 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전용차량 관리 및 운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200천원** 【기정예산 : 4,200천원 - 추경 감 : 2,000천원】
 - ※ 감액 사유 : 차량 유지·보수비 집행 잔액 삭감
- 사 업 량 : 보험료 1회, 자동차세 2회, 유지·보수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 전용차량(1대) 보험료 등 지급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2.17.>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핸드볼팀 전용차량(1대) 보험료, 자동차세, 유지·보수비 - 차량 보험료 : 1,000,000원 - 자동차 세 : 200,000원 - 차량 유지· 보수비 : 1,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200		4,200	2,200	△2,000		계속
국 비							
도 비	2,200		4,200	2,200	△2,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5	김현지 (행) 2432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전세)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통 계 목	기타자본이전 (4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전월세 보증금
- 사업 위치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천안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30,000천원 【기정예산 : 170,000천원 - 추경 감 : 40,000천원】
 - ※ 감액 사유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 보증금 차액 삭감
- 사 업 량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1곳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전세 보증금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전세) : 130,000천원 ○ 핸드볼 합숙소(천안) 전세 보증금 : 130,000,000원 ※ 2020년부터 도 체육회에서 도청 소속팀으로 이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		170,000	130,000	△40,000		계속
국 비							
도 비	130,000		170,000	130,000	△4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업 (행) 3855	김현지 (행) 2432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월세)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통 계 목	기타자본이전 (4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의 전월세 보증금
- 사업 위치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천안, 논산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60,000천원 【기정예산 : 100,000천원 - 추경 감 : 40,000천원】**
 - ※ 감액 사유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월세 보증금 차액 삭감
- 사 업 량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3곳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월세 보증금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3.18., 2012.2.17.>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보증금 : 60,000천원 ○ 핸드볼 합숙소(천안) 월세 보증금 : 20,000,000원 ○ 마라톤(남) 합숙소(논산) 월세 보증금 : 20,000,000원 ○ 마라톤(여) 합숙소(논산) 월세 보증금 : 20,000,000원 ※ 2020년부터 도 체육회에서 도청 소속팀으로 이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0,000		100,000	60,000	△40,000		계속
국 비							
도 비	60,000		100,000	60,000	△4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엽 (행) 3855	김현지 (행) 2432

체육지도자 연수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 관리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지도자들의 실무중심의 연수를 통한 업무능력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27,000천원 - 추정 감 : 27,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체육지도자 연수 미 개최 전액 삭감
- 사 업 량 : 130여명(전문교육기관 1박 2일 위탁교육 / 년 1회(전체 인원의 40% 실시))
 - 도내 체육지도자 330명(전문27, 생활174, 장애인90, 도직장팀5, 도체육회 직장팀8, 시군직장팀 26)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전문교육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발전 방안 모색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교육비 : 9,000천원 ◦ 전문 강사료 : 2시간×600,000×7명= 8,400,000원 ◦ 레크레이션 사회자 : 2시간×300,000원=600,000원 ■ 사용료 : 10,260천원 ◦ 숙박비 : 51실×100,000원×1박= 5,100,000원 ◦ 식 비 : 130명 ×4식×8,000원=4,160,000원 ◦ 시설사용료 : 세미나실 2일= 1,000,000원 ■ 운영비 : 7,740천원 ◦ 여행자보험 : 130명×5,000원= 650,000 ◦ 음료 및 부식대 : 130명×5,000원×2일= 1,300,000원 ◦ 책자 인쇄비, 현수막 등 제반운영비 : 5,79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27,000	0	△27,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27,000	0	△27,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7,000	27,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이신영 (행) 3854

4S정책 아카데미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체육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 계 목	행사운영비 (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정책논의 및 충남체육정책 발전 방안 모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 ~ 2020. 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210,000천원 - 추경 감 210,000천원】
- ※ 도비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삭감
- 사 업 량 : 1회(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체육정책 발전방안 모색(워크숍)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발전 방안 모색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4S정책아카데미 워크숍 개최(1회)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통합과정 ○ 전액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210,000	0	△210,000		계속
국 비							
도 비	0		210,000	0	△210,000		도비
시군비							
기 타							자부담 등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1,600	14,000	7,600	6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최수룡 (행) 3861

4S 정책아카데미 참석자 실비보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지방체육진흥 및 선수육성
	세부사업	체육정책협력 거버넌스 구축
	통 계 목	행사실비보상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의 상생과 협력을 통한 정책논의 및 충남체육정책 발전 방안 모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 2021. 12. (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63,000천원 - 추경 감 63,000천원】**
- ※ 도비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삭감
- 사 업 량 : 1회(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관계자)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전문·생활·장애인·학교체육 발전 방안 모색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4S정책아카데미 참석자 실비(1회) :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학교체육 통합과정 ○ 전액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63,000	0	△63,000		계속
국 비							
도 비	0		63,000	0	△63,000		도비
시군비							
기 타							자부담 등

* 보조율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600	3,432	9,168	2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최수룡 (행) 3861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도 대표선수단 지원을 통한 목표달성 및 충남체육 위상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27,160천원 【기정예산 2,310,000천원 - 추경 감 1,482,84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회 순연 개최 결정으로 미 집행액
- 사 업 량 : 47개종목 1,700여명, 35개종목 1,1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체육회
- 사업 내용 : 전국(소년)체육대회 우리도 대표선수단 운영 및 참가 지원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전국체육대회 지원 : 773,500천원> ■ 전국(동계)체육대회 관련업무 여비 : 700천원 ■ 강화훈련비 : 501,480천원 ◦ 하계강화훈련비: 346,400천원 - 346,400천원×1식(210,000원~350,000원 대학·일반부 차등지원) ◦ 동계강화훈련비: 85,080천원 - 85,080,000원×1식(1인 250,000원 340여명)=85,080천원 ◦ 전략종목 및 집중훈련선수단 지원: 70,000천원 - 전국체전 대진추첨에 및 현지적응훈련에 따라(45개종목: 1인 1,000천원~2,0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재경실업팀 지원금 : 210,000천원 ◦ 미래에셋 대우 남, 여 탁구단 - 50,000천원×2팀=100,000천원 ◦ NH농협은행 여자 테니스 - 30,000천원×1팀=30,000천원 ◦ MG새마을금고 여자 배드민턴 - 80,000천원×1팀=80,000천원 ■ 배구(남) 일반부 운영지원금 : 61,320천원 ◦ 대광자원(남) 배구선수단 <전국동계체육대회 지원 : 53,600천원> ■ 선수단 단복: 19,968천원 - 199,680원×100명=19,968천원 ■ 선수단 보험료: 538천원 - 538,000원×1식=538천원 ■ 선수단 격려 및 해단식: 3,184천원 - 해단식: 12,000원×57명=684천원 - 격 려: 500,000원×5종목=2,500천원 ■ 선수단 수송비: 3,560천원 - 40,000원(20,000원×2회)×89명=3,560천원 ■ 선수 및 지도자 숙식보상: 22,850천원 - 51,350원×5일×89명=22,850천원 ■ 동계체전 입상단체 선수·지도자 포상금: 3,500천원 - 300,000원×5명=1,500천원(금) - 200,000원×5명=1,000천원(은) - 100,000원×15명=1,000천원(동)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 : 60천원> ■ 전국소년체전 참가여비: 6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827,160	0	2,310,000	827,160	-1,482,840	0	
국 비	0				0		
도 비	827,160		2,310,000	827,160	-1,482,84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75,664	2,130,014	145,650	93.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635-2430	김건환 (행) 635-3851	이신영 (행) 635-3854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20만 도민에게 스포츠를 보급, 대회 참여를 통한 지역체육 저변확대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01.0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120천 원** 【기정예산 297,000천원 - 추경 감 287,88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대회 순연 개최 결정으로 미 집행액 발생
- 사 업 량 :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체육회
- 사업 내용 :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1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 9,120천원 ○ 사무관리비 : 3,510천원 · 참가요강 제작 인쇄 : 5,400원×650부 = 3,510천원 ○ 공공운영비 : 4,500천원 ·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 4,500,000원×1년(12개월) = 4,500천원 ○ 국내여비 : 1,110천원 · 충청남도체육대회 관련 여비 : 1,110,000원×1식 = 1,11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120	0	297,000	9,120	△287,880	0	
국 비	0				0		
도 비	9,120		297,000	9,120	△287,88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30,000	289,410	40,590	87.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635-2430	김건환 (행) 635-3851	이신영 (행) 635-3854

회원종목단체 육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협회관리팀 운영으로 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 전략종목 및 비인기 종목 육성 지원으로 지방체육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01.0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899,327천원 【기정예산 1,944,327천원 - 추경 감 45,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3.1절 역전경주대회 취소 및 전국대회 미개최로 감액
- 사 업 량 : 협회관리팀 9종목 46명, 국제대회 출전선수 및 임원, 회원종목단체 61개종목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체육회
- 사업 내용 : 협회관리팀 인건비 및 운영비, 정구팀 운영비 지원 등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 도내대회 및 행사지원 추진 ◦ 300,000원×16회 = 4,800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제대회 파견선수 및 임원격려 ◦ 400,000원×50회 = 20,000천원 ■ 전국규모대회 참가격려: 20,000천원 ◦ 500,000원×22종목(시·도대항 참가선수, 지도자)=11,000천원 ◦ 300,000원×30종목(전국규모대회 참가선수, 지도자)=9,000천원 ■ 우수선수 및 팀격려: 30,000천원 ◦ 500,000원×30팀=15,000천원(20명 이상 전국체전 강화훈련팀) ◦ 300,000원×50팀=15,000천원(20명 이하 전국체전 강화훈련팀) ■ 협회관리팀 육성 : 910,000천원 ◦ 10종목 45명(인건비, 장비비, 단복비, 훈련비 등) ■ 우수선수 보상: 180,000천원 ◦ 우리도 연고 관외, 관내 참가선수 - 육상 등 20종목 100명(월100,000원 ~ 500,000원 차등지급) ■ 회원종목단체 활동보상비 : 301,527천원 ◦ 500,000원~250,000원 차등 지원 ■ 대학체육활성화사업 : 250,000천원 ◦ 1차 지원 - 우수선수 장려금 지원 : 150,000천원(1,000천원~4,000천원 성적에 따른 차등지급) · 대상자 : 팀별 신입생 1명, 재학생 2명(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입상자) ◦ 2차 지원 - 팀육성 지원금 : 100,000천원(1,000천원~5,000천원 성적에 따른 차등지급) · 대상팀 : 팀별 전국체전 및 전국대회 출전팀 중 입상팀(1위~3위) ■ 전국대회 개최지원 : 33,000천원 ◦ 33,000,000원×1식(16개종목)=33,000천원 (1,000천원~3,000천원 차등지원) ■ 정구(여) 운영비 ◦ 150,000,000원×1식 = 15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99,327	0	1,944,327	1,899,327	45,000	0	
국 비	0				0		
도 비	1,899,327		1,944,327	1,899,327	△4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726,000	1,699,492	26,508	98.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635-2430	김건환 (행) 635-3851	이신영 (행) 635-3854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 및 도내 체육대회 개최·참가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및 전국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413,000천원(도비) 【기정예산 832,000천원 - 추경 감 419,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안전상 문제로 개최(참가)취소된 대회의 지원비 감액(추후 개최예정 대회 제외)
- 사 업 량 :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지원,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종목별 도지사기대회 개최, 종목별 동호인행사지원, 전국대학생스포츠 대제전)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체육회
- 사업 내용 : 전국단위 및 도 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 지 원 근 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 413,000천원 ○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 2,000천원 ○ 대학스포츠대제전 : 80,000천원 ○ 종목별 도지사기 대회 개최지원 : 193,000천원 ○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지원 : 68,000천원 ○ 종목별 전국대회 참가지원 : 50,000천원 ○ 종목별 동호인행사 지원 : 2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13,000	0	832,000	413,000	△419,000	0	
국 비	0						
도 비	413,000		832,000	413,000	△419,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95,000	895,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행복드림 생활체육교실 운영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외계층 유·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스포츠 복지」 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남도내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403천원(도비) 【기정예산 250,000천원 - 추경 감 249,597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취소에 따른 감액
- 사 업 량 : 60개 클럽 이상(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배려계층 아동단체)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체육회
 - 아동이 선호하는 종목(티볼)을 선정, 전문 외부강사 배치 및 용품지원을 통한 1클럽별 주 1회 1시간 20명 이내 교실운영
 - 시·군 종목별 지역리그전을 거쳐 선발된 2팀을 대상으로 최종 결선리그 개최 및 스포츠이벤트 진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과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행복드림 생활체육 교실 운영 : 403천원 ○ 운영비(회의비) : 40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3	0	250,000	403	△249,597	0	
국 비	0						
도 비	403		250,000	403	△249,597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00	15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소병욱 (행) 3852	김정자 (행) 3857

체육진흥 및 국제교류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교류를 통한 서로간의 선진기술 습득과 국제경기 경험 축적 및 지도방법 교류를 통한 경기력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체육회
- 사업 기간 : 2020.01.0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95,330천원 【기정예산 200,000천원 - 추경 감 104,67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하여 국제교류 및 회원단체 해외연수 취소로 감액
- 사 업 량 : 일본 1회, 러시아 1회, 도내 선수,지도자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체육회
- 사업 내용 : 체육교류를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국제경기 경험 축적 및 지도방법 교류를 통한 경기력향상 도모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 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체육진흥유공자 공로패, 감사패 등 ◦ 5,730,000원×1식 = 5,730천원 ▣ 각종위원회 참석수당 : 30,000천원 ◦ 수당 100,000원×30명×10회 = 30,000천원 ▣ 체육진흥 홍보 ◦ 500,000원×4사 = 2,000천원 ▣ 충청남도체육회장 선거비용 : 10,000천원 ◦ 10,000,000원×1식=10,000천원 ▣ 회원단체 회의 및 회계교육 : 3,000천원 ◦ 3,000,000원×1식=3,000천원 - 감사수당, 책자인쇄, 현수막, 다과 및 식대 ▣ 체육업무추진(경기단체 각종행사 격려 등) ◦ 25,600,000원×1식 = 25,600천원 ▣ 각종 회의(이사회 등) 업무추진 ◦ 12,000,000원×1식 = 12,000천원 ▣ 충남체육장학회사업 추진 : 7,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95,330	0	200,000	95,330	△104,670	0	
국 비	0				0		
도 비	95,330		200,000	95,330	△104,67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0	219,570	80,430	73.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조건부추진
2019년 (2020~2024)	2019.7월	-	-	-	-	2019.7월	2019.7월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635-2430	김건환 (행) 635-3851	이신영 (행) 635-3854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지원(당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단체 지원 및 선수육성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0년 충청남도체육대회 지원 *2020년부터 '도민체전+생활체전' 양대회 첫 통합, 횡수 당해 연도 표기
- 사업 위치 : 당진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01.01.~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 천원 **【기정예산 760,000천원 - 추경 감 760,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회 순연 개최 결정으로 미 집행 전액 삭감
- 사 업 량 : 1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당진시/당진시체육회
- 사업 내용 :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지원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20 충청남도체육대회 개최 지원 ○ 용역비 : 수용비(인건비 등) : 760,000,000원 - 개최식 행사 : 1식 × 630,000,000원 = 630,000,000원 - 폐회식 행사 : 1식 × 15,000,000원 = 15,000,000원 - 성화봉송 행사 : 1식 × 33,000,000원 = 33,000,000원 - 환영 리셉션 및 부대행사 : 1식 × 18,000,000원 = 18,000,000원 - 행사별 공통비용(64,000,000원) • 기획 및 디자인 : 4행사 × 5,000,000원 = 20,000,000원 • 각종 홍보비 : 4행사 × 7,000,000원 = 28,000,000원 • 운영비(메인스텝, 보조스텝 등) : 4행사 × 4,000,000원 = 16,0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90,500	0	2,950,000	1,890,500	1,059,5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760,000	0	△760,000		
시군비	1,890,500		2,190,000	1,890,500	△299,5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000	600,000	0	100%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이신영 (행) 3854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육성
	세부사업	체육지도자관리 (기금, 민경보)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 개최지 지원 등(기금) : 22,47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2,470	0	67,500	22,470	△45,030	0	
국 비	22,470		22,470	22,470	0		기금
도 비	0		45,030	0	△45,03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기금 33.2%, 도비 66.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1,970	61,095	875	98.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소병욱 (행) 3852	김정자 (행) 3856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자체 민간보조)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전국 및 도내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참가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육성
- 사업 위치 : 도내 및 전국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650,000천원 【기정예산 : 881,000천원 - 추경 감 231,000천원】**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대회 미 개최 결정으로 미교부 예산 삭감
- 사 업 량 : 총 7식(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1식, 도내대회 개최지원 1식,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1식,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1식,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1식, 제2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 1식, 국제대회 참가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외 6식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4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650,000천원(도비) ○ 전국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 179,000천원 ○ 도내대회 개최 지원 : 63,000천원 ○ 제17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참가 : 24,000천원 ○ 제4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 170,908천원 ○ 제14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 32,300천원 ○ 제26회 충남장애인체육대회 개최 : 176,792천원 ○ 국제대회 참가 : 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650,000		881,000	650,000	△231,000		계 속
기 금							
도 비	650,000		881,000	650,000	△231,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C=A-B)	집 행 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65,000	765,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 전 심 사	물품정수 취 득	홍 보 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 연 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 국	과	팀	과 장	팀 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 태 현 (행) 2430	함 정 업 (행) 3855	장 준 민 (행) 3864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장애인체육 육성
	세부사업	장애인 전문체육 육성 (자체 민간보조)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우수선수의 안정적 훈련여건 조성을 통한 선수육성 및 장애인 전문체육기량 향상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예 산 액 : **775,000천원** 【기정예산 : 950,000천원 - 추경 감 175,000천원】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대회 미 개최로 포상금 및 격려금 삭감
- 사 업 량 : 전문체육인 훈련비 지급 등 4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
- 사업 내용 : 전문체육인 훈련비 지급, 체육장비 지원, 가맹경기단체 지원, 포상금 및 격려금 지급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제2항 2호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5조(장애인체육의 경비 지원)

-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775,000천원 ○ 전문체육인 훈련비 : 540,000천원 ○ 체육장비 지원 : 85,000천원 ○ 가맹경기단체 지원 : 145,000천원 ○ 포상금 및 격려금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75,000		950,000	775,000	△175,000		계 속
기 금							
도 비	775,000		950,000	775,000	△175,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 행 액 (B)	집행잔액 (C=A-B)	집 행 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84,200	784,2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 전 심 사	물품정수 취 득	홍 보 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 연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비 대 상
2021년 (2021~2025)							

□ 사업 담당자

실 국	과	팀	과 장	팀 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 태 현 (행) 2430	함 정 업 (행) 3855	장 준 민 (행) 3864

유관순 마라톤대회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추진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민 건강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도비) **【기정예산 40,000천원 - 추경 감 40,000천원】**
- ※ 도비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삭감
- 사 업 량 : 1식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대전일보
- 사업 내용 : 전국규모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유관순평화마라톤대회 ☐ 전액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0,000	0	120,000	0	△12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40,000		40,000	0	△40,000		
시군비				0	0		
기 타	80,000		80,000	0	△80,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33%, 자부담 67%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000	4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이태용 (행) 3863

백제 공주마라톤대회 지원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스포츠마케팅추진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마라톤 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민 건강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공주시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도비) **【기정예산 100,000천원 - 추경 감100,000천원】**
 - ※ 도비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행사 미개최로 전액삭감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장
- 사업 내용 : 전국규모 마라톤대회 개최 지원
-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제2항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 단위로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체육단체로 하여금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동아일보 공주백제마라톤대회 ☐ 전액삭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0	0	300,000	0	△30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00,000		100,000	0	△100,000		
시군비	100,000		100,000	0	△100,000		
기 타	100,000		100,000	0	△100,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33%, 시군비 33%, 자부담 3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	10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이태용 (행) 3863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스포츠산업육성
	세부사업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통 계 목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을 통한 초등학교의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도내 시·군
- 사업 기간 : 2020.7.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07,000천원(기금 390,000, 도비 117,000)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증507,000천원】**
※ 증액 사유 : 문체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
- 사 업 량 : 13개소(천안3, 아산1, 서산2, 금산3, 서천1, 청양1, 예산2)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 아산시장, 보령시장, 홍성군수, 청양군수, 금산군수
- 사업 내용 : 초등학교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
- 지원근거 :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7항,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6조

<학교체육진흥법>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제16조(학교체육의 경비 지원) ② 도지사는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시설 확충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13개소 : 780,000천원(기금 390,000, 도비 117,000, 시군비 273,000) ○ 설치비 60,000천원 × 13개소 = 7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80,000			780,000	780,000		신규
국 비	390,000			390,000	390,000		기금
도 비	117,000			117,000	117,000		
시군비	273,000			273,000	273,000		
기 타							자부담 등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정책팀	노태현 (행) 2430	김건환 (행) 3851	이태용 (행) 3863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도민체전시설 확충 및 보수보강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시설 확충 통한 지방체육 진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보령시
- 사업 기간 : 2020. 1월 ~ 12월
- 예 산 액 : 0천원(도비) 【기정예산 855,000천원 - 추경 감 855,000천원】
 - ※ 감액사유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순연
- 사 업 량 : 도민체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보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도민체전 개최지 체육시설 보수·보강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 도민체육대회 시설보수보강 1식 = 0원	
총사업비	0원	

※ 감액사유 :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한 2020년 도민체전 개최지 순연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710,000		1,710,000	0	-1,710,000		계속
국 비	0						
도 비	855,000		855,000	0	-855,000		
시군비	855,000		855,000	0	-85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900,000	90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성립전)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지방체육시설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체육시설 확충 통한 지방체육 진흥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사업 위치 : 아산시 권곡동 곡교천변 일원
- 사업 기간 : 2020년 ~ 2021년
- 예 산 액 : 400,000천원(특교)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중 400,000천원】
- 사 업 량 : 체육시설 확충(파크골프장(36홀, 18홀) 2개소 등)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파크골프장 조성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아산시 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사업 : 400,000천원 ○ 아산시 곡교천변 체육시설 확충×1식 : 4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0	0	400,000	400,000	0	
국 비	400,000			400,000	400,000		특교400,000천원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국민체육센터 건립	정책사업	충남체육진흥
	단위사업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세부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통 계 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민 누구나,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확충
- 사업 위치 : 공주시 등 9개 시군 11개소
- 사업 기간 : 2019~2022년(3개년)
- 예 산 액 : **12,600,000천원(국비) 【기정예산 11,400,000천원 + 추경 중 1,200,000천원】**
 - ※ 증액사유 : 2020년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제로에너지시설 조성) 공모 선정('20.10.)
- 사 업 량 :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일반형, 장애인형) 신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등 9개 시군
- 사업 내용 : 문체부 생활SOC 공모사업 선정으로 생활밀착형(일반형·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건립
- 지원근거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국민체육센터 건립 : 11,400,000천원(11개소) - 공주시 국민체육센터 : 1,000,000천원 - 아산시 둔포 국민체육센터 : 700,000천원 - 서산시 테크노밸리 국민체육센터 : 700,000천원 - 계룡시 국민체육센터 : 1,500,000천원 - 당진시 국민체육센터 : 1,000,000천원 - 서천군 국민체육센터 : 1,000,000천원 - 홍성군 국민체육센터 : 1,500,000천원 - 천안시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금산군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당진시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홍성군 반다비 체육센터 : 1,000,000천원 ■ 2020년 국민체육센터 친환경 재구조화 사업('20.10.) : 1,200,000천원(2개소) - 서천군 생활체육관(제로에너지시설 조성) : 700,000천원 - 당진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제로에너지시설 조성) : 5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400,000	0	11,400,000	12,600,000	1,200,000	0	계속
국 비	11,400,000		11,400,000	12,600,000	1,20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8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지원팀	노태현 (행) 2430	박주완 (행) 3853	김구남 (행) 2433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 이자액 반환금	정책사업	재무활동(체육진흥과)
	단위사업	보전지출(체육진흥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로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예 산 액 : **187천원(도비)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중187천원】**
※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기금지원액(804,160천원)에 대한 이자액
- 사 업 량 : 15개 시·군 14,000여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인근 체육시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체육진흥조례 제13조(전문 및 생활체육의 경비 지원) <개정 2017. 6.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체육 진흥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
3. 생활체육 동호인 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5.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관련단체의 육성 및 지원
8.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9.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10. 도 체육회 운영비
11.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 이자액 반환금 ○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 이자액 : 186,67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7		0	187	187		
국 비							
도 비	187		0	187	187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복지팀	노태현 (행) 2430	소병욱 (행) 3852	이은주 (행) 3857

2019년도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정책사업	재우활동(체육진흥과)
	단위사업	보전지출(체육진흥과)
	세부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통 계 목	국고보조금 반환금 (8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태권도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기금 지원 사업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19. 5. 1. ~ 2019. 12 .31.
- 예 산 액 : 79천원(집행잔액) 【기정예산 0천원 + 추경 중79천원】
- 사 업 량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인건비 및 운영비
- 지원 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2019년도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 78,070천원		
	○ 2019년도 장애인실업팀 육성사업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태권도팀 인건비 및 운영비		
	구 분	금 액	비 고
	교부액	20,000,000원	
	집행액	19,933,320원	
	집행잔액	66,680원	반환금
이 자	11,390원	반환금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9	0	0	79	79	0	신규
국 비							
도 비	79		0	79	79		
시군비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체육활동지원팀	노태현 (행) 2430	함정엽 (행) 3855	김현지 (행) 2432

관 광 진 흥 과

관 광 진 흥 과

1.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169
2. 관광의 날 행사	171
3. 충남관광 아카데미	173
4.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175
5.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177
6. 국내박람회·관광홍보전·설명회 등 운영	179
7.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시군경상)	181
8. 해외 홍보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협의	183
9.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185
10.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 사업	187
11. 한국관광공사 시군 공동해외 마케팅	189
12.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191
13. 워킹페스타 in 백제	193
14. 문화관광축제 지원	195
15.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197

14. 축제관계자 워크숍 등	199
15.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201
16. 빅데이터 분석	203
17. 제23회 보령 머드축제지원	205
18. 대한독립만세길조성	207
17. 백제문화이음길	209
18.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화재안전 시설 지원)	211
19.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213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세부사업	지역 관광진흥 육성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지속 발전 가능한 충남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5.~2020.12월(신규사업)
- 예 산 액 : **15,000천원(도비) 【기정예산 20,000 - 추경 감 5,000】**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전문가 참여 시책선정 행사 등 추진 불가로 사업 축소 추진
- 사 업 량 : 시책 선정, 전문가 자문료 및 사업계획서 책자 제작
 - 대상인원 : 100명(대학교수, 유관기관 단체, 도·시군 공무원 등)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전문가 참여를 통한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4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관광분야 10대 사업 및 시책 발굴 : 15,000천원 ○ 10대 사업 및 시책 제안접수 및 사전심사 : 2,700천원 - 제안자포상 : 700천원(10천원×70명) / 심사수당 : 2,000천원(100천원×20명) ○ 10대 시책 자문료(사업계획서 접수) : 10,000천원(1,000천원×10대시책 선정자 10명) ○ 10대 시책 책자 제작 : 2,3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00	0	20,000	15,000	-5,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5,000		20,000	15,000	-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고상욱 (행) 3882

관광의 날 행사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세부사업	관광산업자생력 강화
	통 계 목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광진흥 유공자 표창 및 화합프로그램 진행으로 관광종사자 사기진작, 미래지향적
충남관광 발전 방향 모색, 관광수용태세 교육 실시 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9,000 - 추정 감 9,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관광종사자 화합행사 등 관광의 날 행사 추진 불가로 사업 취소
- 사 업 량 : 유공자 표창 등 기념행사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관광협회
- 사업 내용 : 관광의 날 기념식 및 관광산업 진흥 유공자 표창, 관광종사자 환대서비스 교육 등
- 지원 근거 : 내부방침(관광의 날 개최계획 수립)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관광의 날 행사 지원 : 9,000천원(도비) ○ 식 비 : 20천원 × 200명 = 4,000천원 ○ 행사장 임차료 : 500천원 × 1일 = 500천원 ○ 강사료 : 300천원 × 1명 = 300천원 ○ 교육교재 인쇄비 : 10천원 × 200부 = 2,000천원 ○ 기념품 : 10천원 × 200명 = 2,000천원 ○ 예비비 : 200천원 <변경> ▣ 사업비 전액삭감 : 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9,000	0	-9,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9,000	0	-9,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7,205	1,795	8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고상옥 (행) 3882

충남관광 아카데미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세부사업	관광산업자생력 강화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광사업 구상을 위한 전문가와 관계자의 토론을 통해 충남관광발전 방향 모색, 충남관광수요를 반영하는 관광정책의 방향제시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10,000 - 추정 감 1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도·시군 합동 전략회의 및 교육 추진 불가로 사업 취소
- 사 업 량 : 토론회 및 교육 1회(100명 내외)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 관광 정책 구상 및 추진을 위한 아카데미 운영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충남관광 아카데미 운영 : 10,000천원(도비) ○ 강사료(원고료 포함) : 250,000원 × 2회 = 500천원 ○ 교재제작 : 10,000원 × 100부 = 1,000천원 ○ 식 대 : 15,000원 × 100명 × 3회 = 4,500천원 ○ 숙 박 료 : 100,000원 × 35객실 = 3,500천원 ○ 운영비 : 500천원 <변경> ■ 사업비 전액삭감 : 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0,000	0	-1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10,000	0	-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	9,291	709	92.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고상옥 (행) 3882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기반 확충 및 육성
	세부사업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관광지 방역 및 수용태세 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 불안 심리 해소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4개 시·군 113개 지점
- 사업 기간 : 2020년 9월 ~ 2021년 2월
- 예 산 액 : **3,448,308천원(국비) 【기정예산 0 + 추경 중 3,448,308】**
※ 증액 사유 : 도내 관광지 방역 국비지원에 따른 추경예산편성
- 사 업 량 : 방역지점 113개지점, 방역요원 343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각 시군
- 사업 내용 : 관광지 방역, 관광지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지 환경 점검 등
- 지원근거 : 관광기본법 제13조

관광기본법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 ① 제13조(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관광지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 3,448,308천원 요원 1인당 한달 2,000천원 (인건비 :1,800천원, 운영비 200천원) ※ 결원 시 수시보충을 통한 인원관리 ○ 천안시 : 36,000천원, 공주시 : 519,590천원, 보령시 : 104,000천원, 아산시 : 225,169천원, 서산시 : 128,000천원, 논산시 : 300,000천원 당진시 : 156,000천원 금산군 : 265,435천원, 부여군 : 648,000천원 서천군 : 72,000천원 청양군 : 115,900천원, 홍성군 : 30,214천원 예산군 : 588,000천원 태안군 : 26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448,308	0	0	3,448,308	3,448,308	0	신규
국 비	3,448,308		0	3,448,308	3,448,308		국고보조금
도 비	0			-	0		
시군비	0			-	0		
기 타	0			-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윤성민 (행) 2441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적인 해설기법 습득으로 충남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해설능력 함양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1,000천원(국43,500 도27,500) **【기정예산 141,000 - 추경 감 7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보수교육, 해설사 한마당 대회 등 집합행사 미개최로 감액
- 사 업 량 : 문화관광해설사 200명 신규 및 전공심화교육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민간위탁사업 공고 수탁자 선정
- 사업 내용 :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교육, 보수교육, 전공심화교육, 경진대회, 관광모니터단 운영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4

제48조의4(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 71,000천원(국비 43,500, 도비 27,500) ○ 신규양성교육(6명, 100시간) : 9,000천원 ○ 전공심화교육(17명, 4일) : 31,000천원 ○ 충남관광 모니터단 운영 : 20,000천원 ○ 해설사 경진대회 : 11,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71,000	0	141,000	71,000	-70,000	0	계속
국 비	43,500		43,500	43,500	0		
도 비	27,500		97,500	27,500	-7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61%, 도비 39%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41,000	141,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팀	허창덕 (행) 2440	정명옥 (행) 3871	고상옥 (행) 3882

국내박람회·관광홍보전·설명회 등 운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국내 관광객 유치증대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관광 이미지 제고 및 관광객 유치 증대
- 사업 위치 : 전국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200,000 - 추경 감 5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박람회, 설명회 일부 취소
- 사 업 량 : 8회(각종 관광박람회 및 관광홍보전 등)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내 관광박람회, 관광설명회 및 여행사 등 방문 홍보전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국내박람회·관광홍보전·설명회 등 운영 : 150,000천원(도비) ○ 국내 박람회 등 참가 : 140,000천원 - 내나라 여행박람회 : 45,000천원 * 부스설치(엠프, 티비, 테이블 등 포함) : 36,000천원 * 이벤트, 홍보물, 인건비(도우미) : 9,000천원 -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박람회, 서울국제관광박람회 등 : 95,000천원 ○ 찾아가는 관광 홍보전(3~4회) : 10,000천원 - 여행주간 연계 고속도로 휴게소, 천안아산역 등 현장 홍보 * 홍보물 제작, 기념품 구입 등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00	-	200,000	150,000	△50,000	-	계속
국 비	-	-	-	-	-	-	
도 비	200,000	-	200,000	150,000	△50,000	-	
시군비	-	-	-	-	-	-	
기 타	-	-	-	-	-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181,665	18,335	90.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효숙 (행) 3886

충남권 핵심관광지 육성(시군경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마케팅강화
	세부사업	핵심관광지육성(시군경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세계유산 백제역사유적 지구를 충남권의 특화된 관광코스 육성
- 사업 위치 : 공주, 부여(백제역사유적지구)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39,200천원(국184,000 도55,200) 【기정예산299,000 - 추경 감59,8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극복 및 내수활성화 관련 사업의 추경예산 편성 재원마련을 위한 기존예산 문체부 기금 절감액 반영
- 사 업 량 : 공주, 부여 각 5개 사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부여군
- 사업 내용 : 금강백제권역 여행자 플랫폼 구축, 금강오딧세이 테마버스 운영, 금강식후경 이색체험 여행 상품개발 운영, 스마트 관광택시 운영, 테마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7조, 제8조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권 핵심관광지 운영 지원사업 : 368,000천원(공주, 부여) 총사업비 368,000천원(국비 184,000, 도비 55,200, 시군비 128,800) ○ 금강백제권역 여행자 플랫폼 구축 : 80,000천원 ○ 금강오딧세이 테마버스 운영 : 96,000천원 ○ 금강식후경 이색체험 여행상품개발 운영 : 128,000천원 ○ 스마트 관광택시 운영 : 48,000천원 ○ 테마관광 코디네이터 양성사업 : 1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68,000	0	460,000	368,000	-92,000	0	계속
국 비	184,000		230,000	184,000	-46,000		기금
도 비	55,200		69,000	55,200	-13,800		
시군비	128,800		161,000	128,800	-32,2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60,000	460,00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내관광팀	허창덕 (행) 2440	김관동 (행) 3872	이경진 (행) 3885

해외 홍보마케팅 및 관광객 유치 협의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국외업무여비 (202-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 관광마케팅 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외 출장
- 사업 위치 : 중국, 일본, 동남아 등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30,000 - 추경 감 30,000】
※ 감액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외 현지 홍보마케팅 행사 등 전면 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
- 사 업 량 : 관광설명회, 박람회 참석 등 8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방한 주요국가 출장 국외여비
- 지원근거 :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조례 제3조, 제3조의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여행을 할 때에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여비지급 구분표)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외 홍보마케팅활동 국외업무여비 : 30,000천원(도비 30,000) ○ 해외 출장 여비 : 1,250천원 × 8회 × 3인 = 30,000천원 <변경> ■ 사업비 전액 삭감 : 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30,000	0	-3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30,000	0	-3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0,500	32,778	7,722	80.9%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3	전택규외 1명 (행) 3894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기타보상금 (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단체관광객을 우리도로 유치하는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관광객 유치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 【기정예산 200,000 - 추경 감 18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관광업체 단체관광객 유치 및 인센티브 신청 급감
- 사 업 량 : 외래관광객 유치 여행사 등에 인센티브 제공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국내외 단체 관광객을 우리도로 유치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 제공
- 지원근거 : 충청남도관광육성조례 제5조(장려금 등 지원)

충청남도 관광육성 조례 제5조(장려금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외 여행사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 200,000천원(도비 200,000) ○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50,000천원 ○ 해외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150,000천원	
	<변경> ■ 국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 20,000천원(도비 2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200,000	20,000	-18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0,000		200,000	20,000	-18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00,000	192,255	7,745	96.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3	전택규, 이경진 (행) 3894, 3885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사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 홍보마케팅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역사유적지구 해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 사업 위치 : 도내 백제역사유적지구 등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20,000 - 추경 감 10,000】**
 ※ 감액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해외 현지 행사 취소로 사업 변경 추진 및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팸투어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위탁사업자
- 사업 내용 : 해외 여행사 등 관련자 초청 팸투어 추진 등을 통한 백제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 : 20,000천원(도비 20,000) ○ 해외 여행박람회 : 20,000원 - 투어리즘 EXPO 재팬 참가 : 20,000천원 × 1회 = 20,000천원 <변경> ■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 : 10,000천원(도비 10,000) ○ 해외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 : 10,000천원 × 1회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20,000	10,000	-1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0,000		20,000	10,000	-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70,000	41,742	28,258	59.6%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3	고수빈 (행) 2445

한국관광공사 시군 공동해외 마케팅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시군과 공동으로 충남관광 홍보 마케팅 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국제관광박람회 개최지 등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 【기정예산 85,000 - 추경 감 55,000】
- ※ 감액 사유 :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국제박람회 등 행사 취소로 사업비 감액
- 사 업 량 : 한국관광공사 시·군 공동 박람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위탁사업자
- 사업 내용 : 관광업계 및 언론사, 일반소비자 대상 충남관광 홍보관 운영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국관광공사·시군 공동해외마케팅 : 85,000천원(도비 85,000) ○ 관광설명회 3회 : 85,000천원 - 일본 : 30,000천원 × 1회 = 30,000천원 - 중국, 대만, 홍콩 : 27,500천원 × 2회 = 55,000천원 <변경> ■ 한국관광공사·시군 공동해외마케팅 : 30,000천원(도비 30,000) ○ 국내 개최 국제관광박람회 1회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0,000	0	85,000	30,000	-55,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30,000		85,000	30,000	-5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0,000	77,449	22,551	77.5%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3	전택규외 1명 (행) 3894

해외 관광설명회 개최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민간위탁금 (307-05)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설명회 개최
- 사업 위치 : 중국 현지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40,000 - 추경 감 4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외 현지 행사 등 전면 취소로 인한 사업비 전액 삭감
- 사 업 량 : 관광설명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위탁
- 사업시행주체 : 위탁사업자
- 사업 내용 : 중국 주요지역 관광설명회 개최
- 지원근거 : 충청남도관광육성조례 제10조, 제11조

제10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공모전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도내 내·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외관광설명회 : 40,000천원(도비 40,000) ○ 중국 관광설명회 1회 : 40,000천원 × 1회 = 40,000천원 <변경> ■ 사업비 전액 삭감 : 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40,000	0	-4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40,000	0	-4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000	3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3	전택규 (행) 3894

워킹페스타 in 백제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세부사업	해외관광홍보마케팅
	통 계 목	자치단체등이전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백제문화에 친숙함을 느끼는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백제권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여 백제역사유적지구 관광명소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남 부여군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1월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50,000 - 추경 감 5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안전성 등 문제로 부여군 행사 미개최 결정
- 사 업 량 : 워킹대회 개최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지원
- 사업시행주체 : 부여군
- 사업 내용 : 워킹대회 참가자 기념품, 홍보물 제작, 행사지원비, 진행요원 인건비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관광육성조례 제7조, 제8조

제7조(보조금)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제2조제3호에 의한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워킹페스타 in 백제 개최 : 100,000천원(도비 50,000, 군비 50,000) ○ 기념품제작 : 2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18,000천원 ○ 행사용 물품 구입비 : 16,000천원 ○ 행사운영비 : 20,000천원 ○ 기획디자인비 : 8,000천원 ○ 진행요원 인건비 : 10,000천원 ○ 운영경비 : 8,000천원 <변경> ■ 사업비 전액 삭감 : 0천원(도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00,000	0	-100,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0		50,000	0	-50,000		
시군비	0		50,000	0	-50,00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0,000	49,050	950	98.1%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국외관광팀	허창덕 (행) 2440	조정림 (행) 3873	고수빈 (행) 2445

문화관광축제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문화관광축제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유망축제를 발굴하고 우수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진흥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17,600천원(국 217,600천원) 【기정예산 420,000 - 추경 감 202,4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관광축제 취소로 도비 지원금 반납
- 사 업 량 : 2개 축제(서산 해미읍성축제, 서천 한산모시문화제)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각 시군
- 사업 내용 : 다양한 지역 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광역 지자체에서 추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여 사업비 지원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 2

제48조의2(지역축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체계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축제에 대한 실태 조사와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축제의 통폐합 등을 포함한 그 발전방향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양한 지역관광자원을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우수한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문화관광축제의 지정 기준 및 지원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문화관광축제 지원 : 435,200천원(국비 217,600, 시군비 217,600) ○ 도내 문화관광축제 2개 지원 - 국비 : 108,800천원 × 2개 축제 = 217,600천원 - 시군비 : 108,800천원 × 2개 축제 = 217,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35,200	0	2,341,800	435,200	-1,906,600	0	계속
국 비	217,600		280,000	217,600	-62,400		
도 비	0		140,000	0	-140,000		
시군비	217,600		1,871,800	217,600	-1,654,200		
기 타	0		50,000		-50,00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20,000	42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정재희 (행) 2446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 우수축제를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문화관광 상품으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축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축제 평가, 지원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2,000천원 【기정예산 27,000 - 추경 감 5,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상반기 축제육성위원회 및 현장평가 미 실시
- 사 업 량 : 20개 축제(현장 평가 등), 회의 개최(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도 지원 축제 평가, 우수축제 선별 및 지원 등 심의·의결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4조

제4조(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충청남도축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우수축제의 선정 및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축제의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원축제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사축제의 통합, 조정, 권고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축제육성위원회 운영 : 22,000천원(도비 22,000) ○ 위원회 참석 수당 : 200천원×15명×1회 = 3,000천원 ○ 축제 평가 수당 : 380천원×2명×1개 = 760천원 ※ 평가 대상 축제 20개(축제 1개당 2명씩 평가) 중 1개 축제 평가 실시 ○ 책자 인쇄 및 위원회 운영비 등 : 8,500천원 ○ 언택트·친환경 축제 서면 자문수당 : 100천원×15명×3회=4,500천원 ○ 일회용품 없는 축제 홍보용품 제작 : 5,240천원 - 스테인레스 빨대 키트, 손수건, 에코백 3종 제작 : 17.5천원×300개 = 5,2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2,000	0	27,000	22,000	-5,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22,000		27,000	22,000	-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500	22,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정재희 (행) 2446

축제관계자 워크숍 등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 지원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 지역축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제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여 축제 담당 공무원 등 축제 관계자의 전문역량 강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801천원【기정예산 9,000 - 추경 감 4,199】**
- ※ 감액 사유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하반기 축제관계자 워크숍 취소
- 사 업 량 : 연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축제 전문가 특강, 토론 및 타 시도 우수축제 답사 등을 통한 축제 관계자 교육 및 축제 운영의 애로사항 해소, 성공적인 축제 운영사례 공유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 3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축제관계자 워크숍 등 : 4,801천원(도비 4,801) ○ 워크숍 책자 제작 및 자료 인쇄비 : 2,438천원 ○ 워크숍 행사장 임차료 : 920천원 ○ 워크숍 강사수당 : 664천원 · 강사비(일반2급, 2시간 기준, 실비포함) 251,000원×2명 = 502천원 · 강사비(일반2급, 1시간 기준) 162,400원×1명 = 162천원 ○ 워크숍 개최준비 수용비 : 779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801	0	9,000	4,801	-4,199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4,801		9,000	4,801	-4,199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9,000	3,875	5,125	4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정재희 (행) 2446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에서 개최되는 우수축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춘 명품 축제로 육성 함으로써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2,400천원(국비 30,000, 도비 142,400) 【기정예산 391,600 - 추경 감 219,2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향토문화축제 취소 및 강경젓갈축제(예비 문화관광축제) 국비 지원
- 사 업 량 : 지역향토문화축제 4개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역축제 평가, 우수축제 선정 및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12조

제12조(지역축제의 지원) 도지사는 위원회의 평가 및 심의를 통해 선정된 우수지역축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지역향토문화축제 지원 : 1,412,400천원(국비 30,000 도비 142,400, 시군비 1,240,000) ○ 국비 : 30,000천원 · 강경젓갈축제(예비 문화관광축제 지원) 30,000천원 × 1개 축제 = 30,000천원 ○ 도비 : 142,400천원 · 35,600천원 × 4개 축제(균등지원) = 142,400천원 ○ 시군비 : 1,24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412,400	0	5,527,200	1,412,400	-4,114,800	0	계속
국 비	30,000			30,000	30,000		
도 비	142,400		391,600	142,400	-249,200		
시군비	1,240,000		5,135,600	1,240,000	-3,895,6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2%, 도비 10%, 시군비 88%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00	450,000	0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정재희 (행) 2446

빅데이터 분석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민간데이터(통신, 카드)를 활용하여 축제의 방문객 유입 효과 및 경제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실증적인 데이터를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축제 지원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기정예산 85,500 - 추경 감 85,5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취소로 축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중단 결정
- 사 업 량 : 총 15회(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축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군의 축제 빅데이터 분석 실시를 의무화하고, 각 시·군에 축제 빅데이터 분석 예산을 지원함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축제 지원 조례 제 3조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축제에 관한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축제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지역축제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축제 빅데이터 분석 : 295,500천원(도비 85,500 / 시군비 210,000) ○ 외부전문가 위탁 용역 : 19,700천원 × 15개 시군 = 295,500천원 <감액> ■ 사업예산 전액삭감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295,500	0	-295,5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0		85,500	0	-85,500		
시군비	0		210,000	0	-210,00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정재희 (행) 2446

제23회 보령 머드축제지원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지역문화축제 육성지원
	세부사업	지역향토문화축제육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내에서 개최되는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인 보령 머드축제를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축제로 지원함으로써 충남의 명품 축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에 기여
- 사업 위치 : 대천해수욕장 일원, 머드광장 해변특설무대
- 사업 기간 : 2020. 6 ~ 7월(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 **【기정예산 80,000 - 추경 감 8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보령 머드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공연 프로그램 미 진행
- 사 업 량 : 무대시스템 설치 등 축제 인프라 구축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보령시
- 사업 내용 : K-POP 슈퍼콘서트, 올머드 빅 콘서트, 힙합파워 콘서트 등 공연 프로그램을 위한 무대 시스템 설치 등 축제 인프라 구축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제 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무대시스템 설치 등 축제 인프라 구축(무대·조명 설치, 특수효과, 음향, 영상, 중계차, 현장중계 등) ○ 80,000 x 1식 = 80,000천원 <변경> ▣ 사업비 전액삭감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250,000	0	-250,000	0	신규
국 비	0			0	0		
도 비	0		80,000	0	-80,000		
시군비	0		170,000	0	-170,000		
기 타	0				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공사TF팀	허창덕 (행) 2440	안재민 (행) 3896	정재희 (행) 2446

대한독립만세길조성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대한독립만세길조성(천안)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3.1만세운동의 시발점인 아우내장터를 중심으로 역사적인 현장의 특징을 살려 '애국 충절' 정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테마 거리로 조성
- 사업 위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209-4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기간 : '17 ~ '23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1,200,000 - 추경 감1,200,000】
 - ※ 감액 사유 : 집행률 저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문체부 예산삭감
- 사 업 량 : 만세길 조성 A=26,250㎡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관광테마거리, 공원확장, 역사조형물 설치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대한독립만세길 조성 : 2,400,000천원(국비 1,200,000, 시군비 1,200,000) ○ 입구조형물 : 650,000천원 × 1개소 = 650,000천원 ○ 만세운동 역사조형물 : 275,000천원 × 2개소 = 550,000천원 ○ 관광테마거리 조성 : 1,200,000천원 × 1식 = 1,200,000천원 <변경> ■ 사업예산 전액 삭감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2,060,000	7,260,000	2,400,000	0	△2,400,000	2,400,000	계속
국 비	5,030,000	2,630,000	1,200,000	0	△1,200,000	1,200,000	균특
도 비	-	-	-	-	0	-	
시군비	7,030,000	4,630,000	1,200,000	0	△1,200,000	1,200,000	
기 타	-	-	-	-	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31,000	431,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의결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7년 3월 (2017~2019)	2013.7월	2018.6월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이연수 (행) 3874	한창민 (행) 3888

백제문화이음길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백제문화이음길 (공주)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고, 2018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등으로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변 관광기반시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관광루트를 개발하여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남 공주시 금성동 187번지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월 ~ 2020. 12월(다년도 계속사업) / 총 사업기간 : '19 ~ '23
- 예 산 액 : 0천원【기정예산 1,000,000 - 추정 감1,000,000】
 - ※ 감액 사유 : 집행률 저조 및 사업시기 미도래 사업에 대한 문체부 예산삭감
- 사 업 량 : 조성면적 A=184,000㎡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공주시
- 사업 내용 : 왕릉교 주변 상징가로, 무령왕릉~정지산 둘레길, 고마나루 조성 등
- 지원 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 제76조 제1항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공주문화 이음길 : 2,000,000천원(국비 1,000,000, 시군비 1,000,000) · 실시설계비 : 공사비 8,672,727천원(부가세 제외금액) × 2.98% = 376,000천원 · 정지산~공산성 연결로 : 1,093㎡ × 1,485천원/㎡ = 1,624,000천원 <변경> ■ 사업예산 전액삭감 : 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1,540,000	570,000	2,000,000	0	△2,000,000	8,970,000	계속
국 비	5,770,000	285,000	1,000,000	0	△1,000,000	4,485,000	균특
도 비	-	-	-	-	0	-	
시군비	5,770,000	285,000	1,000,000	0	△1,000,000	4,485,000	
기 타	-	-	-	-	0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85,000	285,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조건부추진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8년 (2018~2022)	2018.10월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이연수 (행) 3874	한창민 (행) 3888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화재안전 시설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글램핑, 카라반 시설의 최소 이격거리 확보 및 글램핑 천막의 방염성능 확보를 통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내
- 사업 기간 : 20.01.01.~20.12.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129,500천원(국비) 【기정예산82,000 + 추경 중 47,500】**
- ※ 증액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2020.4.10. 및 2020.10.8.)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7개 시군 11개소 야영시설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7개 시군 (공주시,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태안군)
- 사업 내용 : 글램핑 천막 교체, 글램핑 이전 설치, 카라반 이전 설치 등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제76조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영시설 화재안전성 확보 : 331,850천원(국비 129,500 시군비 110,175 자부담 92,175) ○ 공주시 2개소=70,000천원 ○ 부여군 3개소=60,000천원 ○ 아산시 2개소=73,500천원 ○ 서천군 1개소=13,750천원 ○ 당진시 1개소=36,600천원 ○ 태안군 1개소=33,000천원 ○ 금산군 1개소=4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31,850	0	213,100	331,850	118,750	0	
국 비	129,500		82,000	129,500	47,5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110,175		65,550	110,175	44,625		
기 타	92,175		65,550	92,175	26,625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40%, 시군비 30%, 기타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이연수 (행) 3874	이은정 (행) 2443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성립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관광 개발
	세부사업	야영장 활성화프로그램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캠핑장 숲속 음악회, 지역 명사와 함께 하는 마을 여행, 서바이벌 게임 등 야영장 운영 활성화를 통한 다양한 관광자원으로서 야영장 경쟁력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옥산면 신안로40번길 90 등 5개소(판앎 치유정원 등 5개소)
- 사업 기간 : 20.01.01.~20.12.31.(단년도 신규사업)
- 예 산 액 : **90,000천원(국비) 【기정예산 0 + 추경 중 90,000】**
※ 증액 사유 : 문체부 등록야영장 지원 지자체 공모사업 선정(2020.4.10.)에 따른 추가 편성
- 사 업 량 : 1개 시군 5개소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지원(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부여군
- 사업 내용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문화 예술 프로그램, 지역 여행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등)
- 지원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 제76조제1,2항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제76조(재정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 180,000천원(국비 90,000, 시군비 90,000) ○ 부여군 5개소=18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80,000	0	0	180,000	180,000	0	신규
국 비	90,000			90,000	90,000		기금
도 비	0			0	0		
시군비	90,000			90,000	90,000		
기 타	0				0		자부담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관광개발팀	허창덕 (행) 2440	이연수 (행) 3874	이은정 (행) 2443

충 남 도 서 관

충 남 도 서 관

1. 충남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219
2.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221
3. 충남도서관 서비스품질 인증 심사비	223
4. 충남도서관 서비스품질 우수인증 기술지도 자문비	225
5. 충남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227
6. 충남도서관 시설운영 재료구입	230
7.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참가 행사실비 보상	232
8.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리모델링)	234
9. 충남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237
10. 인력운영비(보수)	239
11. 무기계약직 근로자 운영	241
12. 직급보조비	243
13. 업무추진기본여비	245

충남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 운영
	세부사업	자료관리 및 프로그램운영
	통 계 목	기타보상금 (301-12)

□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역주민에게 충남도서관 운영 참여 기회 제공 및 도민과 함께하는 도서관 실현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9,000천원 【기정예산 36,000 - 추경 감 17,000】**
 - ※ 감액 사유 : COVID-19 확산에 따른 도서관 휴관(3개월)으로 봉사활동 기간 및 인원 감소
(도서관 휴관 : 2. 25. ~ 5. 6. / 8. 25. ~ 9. 14.)
- 사 업 량 : 자원봉사자 85명/일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자원봉사자 활동실비 지급
- 지원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 자원봉사자 활동 실비 · 교통비 5000원 x 8.5명 x 25일 x 9개월 = 9,500 · 식비 5000원 x 8.5명 x 25일 x 9개월 = 9,500	3개월 휴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36,000		36,000	19,000	△17,000		
국 비					0		
도 비	36,000		36,000	19,000	△17,000		
시군비					0		
기 타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1,000	29,910	1,090	96.4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정보서비스팀	나병준 (행) 8001	이진숙 (행) 8013	구량모 (행) 8063

충남도서관 기간제근로자 운영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 예 산 액 : 554,784천원 **【기정예산 579,784 - 추경 감 25,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수경시설 미운영에 따라 수경시설 기간제근로자 인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25,000천원 감액
- 사 업 량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시설관리, 청소 등 직접고용근로자(기간제 14명)인건비 및 피복비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2조제1항, 제29조 제2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기간제근로자등보수(101-04) ○ 인건비 : 554,784천원 · 551,784천원(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 등)×14명×12개월 = 554,78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54,784	0	579,784	554,784	△25,000		
국 비	0				0		
도 비	554,784	0	579,784	554,784	△25,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21,089	619,100	1,989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충남도서관 서비스품질 인증 심사비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받아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10,000 - 추경 감 1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품질 인증 심사 불가
- 사 업 량 : 서비스 품질 인증심사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관 서비스 품질 인증 심사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2조제1항

도서관법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운영 ○ 충남도서관 서비스 품질 인증 심사비 : 0원 - 기정예산 10,000천원, 3회추경 감 10,000천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서비스 품질 인증 심사 불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액(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10,000	0	△10,000		
국 비	0				0		
도 비	10,000		10,000	0	△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강성종 (행)8023

충남도서관 서비스품질 우수인증 기술지도 자문비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서관 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인증을 받아 대외적인 공신력 확보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22,000 - 추경 감 22,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품질 인증 심사 불가
- 사 업 량 : 서비스 품질 우수인증 기술지도 자문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관 서비스 품질 우수인증 기술지도 자문비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22조제1항

도서관법 제22조(설치 등)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운영 ○ 충남도서관 서비스품질 우수인증 기술지도 자문비 : 0원 - 기정예산 22,000천원, 3회추경 감 22,000천원 ※ 코로나 19 확산으로 외부인이 참여하는 서비스 품질 우수인증 기술지도 자문 불가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액(A)	3회추경(B)	증감(B-A)		
계	22,000		22,000	0	△22,000		
국 비	0				0		
도 비	22,000		22,000	0	△22,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강성종 (행)8023

충남도서관 운영 및 유지관리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공공운영비 (201-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통한 시설이용편의성 증진 및 전산통신장비의 유지관리를 통하여 전산통신분야 보안성강화 및 이용서비스 확대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74,031천원(기정예산 1,149,657천원 - 추경 감 75,626천원)
 ※ 감액 사유 : 임시 휴관에 따른 공공운영비(공공요금, 장비유지비 등) 절감분 감액
- 사 업 량 : 제세 및 공공요금, 시설물 유지관리, 전산통신장비 유지보수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시설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납부와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 지원근거 : 도서관법 22조 1항, 29조 2항

도서관법 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운영 ○ 공공요금 및 제세 = 296,018	
	· 전기요금 15,000,000원 * 12월 = (180,000)	
	· 정보통신 회선사용료 5,509,000원 * 12월 = (66,108)	
	· 상·하수도요금 3,000원 * 25톤 * 10일 * 12월 = (9,000)	
	· 소방안전협회비 48,000원 * 1회 = (48)	
	· 전기기술인협회비 100,000원 * 2회 = (200)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환경관제 시스템 요금 납부	187,000원 * 12월	=	(2,244)
	· 충남도서관 SMS 요금 납부	2,602,000원 * 12월	=	(31,224)
	· 홈페이지 개인인증 요금 납부	150,000원 * 12월	=	(1,800)
	· 연료비		=	43
	· 비상발전기 연료탱크	1,423원 * 30리터 * 1회	=	(43)
	· 관용차량유지비		=	5,351
	· 유류비	1,423원 * 100리터 * 12회 * 1대	=	(1,708)
	· 수리비	500,000원 * 6회	=	(3,000)
	· 보험료	643,000원 * 1회	=	(643)
	○ 시설장비유지비		=	165,177
	· 소방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553,000원 * 12월	=	(6,636)
	· 전기시설 정밀안전점검 수수료	8,419,000원 * 1회	=	(8,419)
	· 모래놀이터 모래소독	700,000원 * 8회	=	(5,600)
	· 소독 및 방역	962,000원 * 12월	=	(11,544)
	· 조경관리용역	58,700,000원 * 1식	=	(58,700)
	· 외벽및외부유리청소	14,000,000원 * 3회	=	(42,000)
	· 소방시설 유지관리	1,078,000원 * 1식	=	(1,078)
	· 전기시설 유지관리	2,500,000원 * 1식	=	(2,500)
	· 건축물 유지관리	0원 * 1식	=	(0)
	· 기계설비 유지관리	0원 * 1식	=	(0)
	· 수경시설 유지관리	0원 * 1식	=	(0)
	· 통신시설 유지관리	5,000,000원 * 1식	=	(5,000)
	· 승강기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수수료		=	18,700
	· 승강기 정기검사	820,000원 * 1회	=	(820)
	· 승강기 유지관리수수료	1,490,000원 * 12월	=	(17,880)
	· 급수탱크 청소	2,500,000원 * 2회	=	(5,000)
	○ 정보화시스템 및 네트워크시스템 통합 유지보수용역		=	(612,83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74,031		1,149,657	1,074,031	△75,626		
국 비							
도 비	1,074,031		1,149,657	1,074,031	△75,626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19,691	710,018	109,673	86.6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김무진 외 3명 (행)8026

충남도서관 시설운영 재료구입	정책사업	도서관및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	충남도서관운영
	세부사업	충남도서관 유지관리
	통 계 목	재료비 (2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의 안정적 운영관리 및 시설관리 재료 상시 준비를 통해 효율적 시설관리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기정예산 31,920천원 - 추경 감 11,920천원)
 - ※ 감액 사유 : 임시 휴관에 따른 재료비(소모품) 절감분 감액
- 사 업 량 : 전기시설, 통신장비, 기계시설 소모성 재료비 구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관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물품 구입
- 지원근거 : 도서관법 22조 1항, 29조 2항

도서관법 제22조(설치 등)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운영 ○ 전기시설 소모품 ○ 통신장비 소모품 ○ 기계시설 소모품 · 환기필터 · 공조기필터 · FCU 필터 · 모터류 베어링 및 소모품	
	100,000원 * 50개 * 2종	= 10,000
	600,000원 * 1식	= 600
		= 9,400
	1,250,000원 * 2회	= (2,500)
	2,500,000원 * 1회	= (2,500)
	1,300,000원 * 1회	= (1,300)
	3,100,000원 * 1회	= (3,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액(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31,920	20,000	△11,920		
국 비	0				0		
도 비	20,000		31,920	20,000	△11,92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22,075	18,781	3,294	85%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김무진, 김정인 (행)8026, 8022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참가 행사실비 보상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작은도서관 육성지원
	통 계 목	행사실비 지원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참석자에 대한 행사실비보상
- 사업 위치 : 도내 공·사립 작은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
- 예 산 액 : 1,500천원 【기정예산 2,250 - 추경 감 750】
- 사 업 량 : 급량비 지급 8회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교육 인원 제한에 따른 급식 제공 횟수 축소로 사업비 감액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교육 등에 참석한 작은도서관 운영자에 대한 급식 등 제공
- 지원근거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 제2항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참가 행사실비보상 ○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교육 및 워크숍 급량비 - 187,500원 × 8회 = 1,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00		2,250	1,500	-750		
국 비							
도 비	1,500		2,250	1,500	-750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500	2,026	2,474	45%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관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엄은진 (행) 8043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리모델링)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점자도서관 운영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10년 이상) 사립 공공도서관(충청남도점자도서관)을 이전 및 재구성 리모델링을 통하여 업무효율성 증진 및 사용 편의성 제고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일원
- 사업 기간 : 2020.1.1.~2020.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원 **【기정예산 163,636 - 추경 감 163,636】**
 - ※ 감액 사유 : 점자도서관 이전 물건 미확보로 인한 사업비 삭감(163,636천원)
- 사업 량 : 사립 공공도서관 이전 및 재구성 리모델링 1개관(198m²)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점자도서관
- 사업 내용 : 도서녹음실, 열람실, 대면낭독실 등 조성
- 추진 근거 : 도서관법 제23조, 제32조

제23조(업무) 지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 3. 25.>

1.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3.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4. 지역의 도서관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 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
5.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6.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① 국가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운영비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의 관계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6. 2. 3.>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사업명 : 충청남도점자도서관 이전지원(기정 예산 산출 근거) ○ 리모델링(목공사 및 전기공사) = 90,247천원 - 목공사 = 35,351천원 · 재료비 = 22,971천원	

	· 노무비 = 12,380천원 - 전기공사 = 16,851천원 · 재료비 = 9,171천원 · 노무비 = 7,680천원 - 바닥및벽체마감 = 15,978천원 · 재료비 = 7,348천원 · 노무비 = 8,630천원 - 경비 = 2,853천원 · 산재보험료 = 1,090천원 · 고용보험료 = 399천원 · 기타경비 = 1,364천원 - 일반관리비(재료비+노무비+경비)×5% = 3,552천원 - 이윤(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0% = 7,458천원 - 부가세(재료비+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이윤)×10% = 8,204천원 ○ 에어컨설치 = 28,052천원 - 시스템에어컨[18평] 2,200,000×2ea = 4,400천원 - 시스템에어컨[13평] 1,850,000×2ea = 3,700천원 - 시스템에어컨[6평] 1,150,000×3ea = 3,450천원 - 배관설치비[4인(3일)] 920,000×4인 = 3,680천원 - 자재비 4,500,000×1식 = 4,500천원 - 에어컨설치비[3인(2일)] 460,000×3인 = 1,380천원 - 천정마감 2,500,000×1식 = 2,500천원 - 부자재 500,000×1식 = 500천원 - 경비 및 식대 900,000×1식 = 900천원 - 부가세 3,042,000×1식 = 3,042천원 ○ 기능보강 = 45,337천원 - 도서재단기[QN-800/현대오피스] 3,927,000×1대 = 3,927천원 - 도서제본기[TC-5500SMD] 9,900,000×1대 = 9,900천원 - 모빌렉[5련6단이동복식,4730×650×2265] 1,500,000×14ea = 21,000천원 - 녹음실 녹음장비 2,490,000×4ea = 9,960천원 · 오디오믹서[USB1/F 8채널 ProFX] 495,000×4ea = 1,980천원 · 렉마운트키트[ProFX 전용] 38,500×4ea = 154천원 · 콘덴서마이크[SM27] 649,000×4ea = 2,596천원 · 팜필터[ps6] 55,000×4ea = 220천원 · 마이크스탠드 55,000×4ea = 220천원 · cd플레이어[cd-200 tascom] 825,000×4ea = 3,300천원 · 믹서렉[4u믹서렉 오픈형] 275,000×4ea = 1,100천원 · 케이블 97,500×4식 = 390천원 - 녹음장비세팅비[인건비] 275,000×2인 = 550천원	
--	--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163,636	0	-163,636		
국 비							
도 비	0		163,636	0	-163,636		
시군비							
기 타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관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최민숙 (행) 8041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단위사업	도서관 육성지원
	세부사업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도서관법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 운영 및 지원 등)

☐ 산출 근거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공도서관 대체서비스 지원					
	시군구	도서관명	신청 인원	소요예산		
				계	국비	지방비
	합계		2	15,984	7,992	7,992
	서산시	서산시립도서관	1	7,992	3,996	3,996
	서천군	장항농어촌 공공도서관	1	7,992	3,996	3,99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5,984		0	15,984	15,984		신규
국 비	7,992		0	7,992	7,992		국고
도 비							
시군비	7,992		0	7,992	7,992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융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팀	나병준 (행) 8001	이채구 (행) 8012	이미수 (행) 8044

충남도서관 업무 추진 (인력운영비(보수))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충남도서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충남도서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충남도서관)
	통 계 목	보수 (1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165,751천원 【기정예산 1,215,751 - 추경 감 50,000】
 - ※ 감액 사유 :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변동에 따른 보수(101-01) 50,000천원 감액
- 사 업 량 : 인건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지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총사업비	■ 보수(101-01) ○ 인건비 : 1,165,751천원 · 1,165,751천원(기본급,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초과근무 등)×21명×12개월 = 1,165,751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1,165,751		1,215,751	1,165,751	△50,000		
국 비							
도 비	1,165,751		1,215,751	1,165,751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090,004	1,086,131	3,873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충남도서관 무기계약직근로자 운영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충남도서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충남도서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충남도서관)
	통 계 목	무기계약근로자등보수 (1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 예 산 액 : **242,342천원** 【기정예산 292,342 - 추경 감 50,000】
 - ※ 감액 사유 : 무기계약직 현장실무 인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50,000천원 감액
- 사 업 량 :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무기계약근로자(14명)인건비 및 피복비
- 지원근거 : 도서관법 22조 1항, 29조 2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인건비 : 242,342천원 · 242,342천원(기본급, 수당, 연가보상비, 초과근무 등)×13명×12개월 = 242,34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242,342		292,342	242,342	△50,000		
국 비							
도 비	242,342		292,342	242,342	△5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인력운영비(직급보조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충남도서관)
	단위사업	인력운영비(충남도서관)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충남도서관)
	통 계 목	직무수행경비(204-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직급보조비 지급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도청대로 577
- 사업 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 예 산 액 : 45,630천원 【기정예산 45,300 + 추경 중 330】
 - ※ 증액 사유 : 인사이동으로 인한 인원변동에 따른 직급보조비(204-02) 부족분 330천원 추가계상
- 사 업 량 : 직무수행경비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소속 공무원 직무수행경비 지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직무수행경비(204-02) ○ 직급보조비 : 12,200천원 · 직급보조비 45,300,000원 * 1식 = 45,300 · 직급보조비 추가비용 330,000원 * 1식 = 330 ※ 직급보조비(6급 165천원, 7급 155천원, 8~9급 145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45,630		45,300	45,630	330		
국 비							
도 비	45,630		45,300	45,630	33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43,705	43,565	140	9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

업무추진 기본여비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단위사업	기본경비
	세부사업	기본경비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도서관 업무추진 출장 여비
- 사업 위치 : 충남도서관
- 사업 기간 : 2020. 10. 1. ~ 2020. 12. 31.
- 예 산 액 : **12,130천원** 【기정예산 32,130 - 추경 감 20,000】
- ※ 감액 사유 : 코로나19로 출장감소에 따른 출장 여비(202-01) 20,000천원 감액
- 사 업 량 : 충남도서관 출장 여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도서관
- 사업 내용 : 충남도서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출장에 따른 여비 지급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도서관 업무추진 기본여비 · 충남도서관 업무추진 기본여비 12,130,000원 * 1식 = 12,13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A-B)		
계	12,130		32,130	12,130	△20,000		
국 비							
도 비	12,130		32,130	12,130	△20,0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30,600	27,640	2,960	9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운영지원팀	나병준 (행)8001	유대준 (행)8011	이성규 (행)8021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문 화 정 책 과

문화정책과

1.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논산 문예회관 리모델링) ... 253

주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문화예술 커뮤니티 조성(논산 문예회관 리모델링)	정책사업	지역문화활성화
	단위사업	문화기반 확충 및 운영 (균형발전특별회계)
	세부사업	문예회관 리모델링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노후된 문예회관의 기능 보강 및 공연장 안전성 확보
- 사업 위치 : 논산시 시민로 270
- 사업 기간 : 2018년 ~ 2020년
- 예 산 액 : 1,337,000천원(도비) 【본예산 337,000천원 + 추경 중 1,000,000천원】
- ※ 증감 사유 : 공사 추진일정에 따른 사업비 잔액(1,000,000천원) 당해연도 필요
- 사 업 량 : 리모델링 및 무대·음향 조명 교체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노후화된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교체 및 공연장 대수선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 제2항

충청남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2. 사업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4,500,000	
	○ 설계비 = 800,000	
	○ 리모델링 공사비 = 400,000	
	○ 무대공사 = 3,300,000	
	- 무대기계 : 1,490,000천원	
	- 무대조명 : 780,000천원	
	- 무대음향 : 730,000천원	
	- 부 가 세 : 30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500,000	126,000	674,000	2,674,000	2,000,000	0	계속
도 비	2,250,000	63,000	337,000	1,337,000	1,000,000	0	
시군비	2,250,000	63,000	337,000	1,337,000	1,000,0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850,000	85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2017.3.	2016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문화시설팀	홍은아 (행) 2410	김기남 (행) 3804	이윤서 (행) 3820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관 광 진 흥 과

관 광 진 흥 과

1. 안면도관광지개발 법률자문 등 행정절차 제 경비 261
2. 안면도관광지개발 투자유치 활동 263
3. 안면도 관광지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265
4.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본업무 추진(국내여비) 267
5. 안면도관광지개발 설명회 등 행사 운영 269
6.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사무관리비) 271
7.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국내여비) 273

안면도관광지개발 법률자문 등 행정절차 제 경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MOU 및 협약체결, 사업지침서 유권해석, 개발사업자 선정 등 원활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 및 회계 자문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리·중장리 일원
- 사업 기간 : 20. 1. 1. ~ 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000천원(도비) 【기정예산 40,500 - 추경 감 15,500】**
- ※ 증감 사유 : 투자유치 지연에 따른 법률자문 횟수 감소
- 사 업 량 : 법률자문 5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면도관광지 개발 사업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가 및 법률자문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면도개발 행정절차이행 수수료 : 25,000천원(전액 도비) ○ 법률 자문료 등 · 5,000천원×5회 = 25,000천원 • 산출방식(투입시간×시간당 변호사요율) － 시간당 변호사 요율(약정체결) : 20만원~40만원 － 1회 평균 : 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5,000	0	40,500	25,000	-15,500	0	
국 비	0				0		
도 비	25,000		40,500	25,000	-15,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000	5,221	779	87%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엄종식 (행) 2444

안면도관광지개발 투자유치 활동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개발 사업 관련 투자유치 대상지구(1·3·4)에 대한 투자유치활동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승언·중장·신야리 일대(안면도 관광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40,500 - 추경 감 20,500】**
 - ※ 증감 사유 : 투자유치활동 인쇄물 수정을 통한 재사용 등 비용 절감
- 사업 량 : 투자유치활동 동영상 및 인쇄물 제작, 주민협의회 개최 및 개발사업자 유치 공모 추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면도관광지 투자유치활동 및 공모 추진, 주민협의회 운영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면도관광지개발 투자유치활동 : 20,000천원(전액 도비) ○ 홍보물 제작 및 투자관련 심사수당 등 : 10,000천원 · 홍보물 제작 : 7,5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10천원 × 250개 = 2,500천원 - 동영상 제작 1식 5,000천원 · 투자 관련 심사수당 : 500천원 × 5명 = 2,500천원 ○ 주민협의회 운영 및 현장시찰 방문 : 1,000천원 · 참석수당 : 100천원 × 5명 × 1회 = 500천원 · 회의 준비비 : 500천원 ○ 개발사업자 공모 시행 : 9,000천원 · 평가수당 : 500천원 × 10명 = 5,000천원 · 공모지침서 및 브로슈어 제작 : 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40,500	20,000	-20,500	0	
국 비	0				0		
도 비	20,000		40,500	20,000	-20,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2,000	11,105	895	9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엄종식 (행) 2444

안면도 관광지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면도 관광지 도유지 매각 및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등을 통한 원활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승언·중장·신야리 일대(안면도 관광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0천원 【기정예산 121,500 - 추경 감 121,500】**
※ 증감 사유 : 도유지 매각 미발생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및 지적측량 미집행
- 사 업 량 : 감정평가 1회, 지적측량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면도 관광지 공유재산 매각계획에 따른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
- 지원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 121,500천원(도비) ○ 감정평가 수수료 등 : 70,000천원 ○ 지적측량 수수료 등 : 51,500천원	
	<변경> ■ 감정평가 및 지적측량 수수료 :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0	0	121,500	0	-121,500	0	
국 비	0				0		
도 비	0		121,500	0	-121,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전서영 (행) 3892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본업무 추진(국내여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투자유치활동, 공유재산 관리 등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따른 기본경비
- 사업 위치 : 안면도관광지 개발 관련 기초·광역 지자체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기정예산 13,500 - 추경 감 3,500】**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기업방문 투자유치 활동을 영상회의로 대체
- 사 업 량 : 안면도관광지 개발(공유재산 관리) 및 투자유치 활동 1인당 50회 이상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안면도관광지 개발사업 당면업무 추진 국내여비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0조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면도관광지개발 기본업무 추진 : 10,000천원 ○ 관내·외 출장 등 개발사업 및 투자유치 활동 기본업무 추진 - 50천원(1회 출장 평균) × 5명 × 40회 = 1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00	0	13,500	10,000	-3,500	0	
국 비	0				0		
도 비	10,000		13,500	10,000	-3,5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3,500	9,915	3,585	73%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엄종식 (행) 2444

안면도관광지개발 설명회 등 행사 운영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운영 기본경비
	통 계 목	행사실비보상금 (301-09)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조성사업 업무추진 시,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우수 개발사례 견학 등 필요
- 사업 위치 : 태안군 안면읍 승언, 중장, 신야리 일원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다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0천원(도비) 【기정예산 4,500 - 추경 감 4,400】
- ※ 증감 사유 : 코로나 19 상황으로 선진지 견학 등 불가능으로 미 집행
- 사 업 량 : 설명회 1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지역주민 설명회 등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4조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개발사업비, 기타 개발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안면도관광지 개발 관련 사업 설명회 : 100천원 - 주민 설명회 × 1회 = 1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100	0	4,500	100	-4,400	0	
국 비	0				0		
도 비	100		4,500	100	-4,4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1,500	-	1,5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전서영 (행) 3892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사무관리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통 계 목	사무관리비 (2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에 필요한 물품·장비 구입 및 불법행위 근절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대(안면도관광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1,180천원(도비) 【기정예산 54,180 - 추경 감 3,000】
 - ※ 증감 사유 : 코로나19의 여파로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지 시설관리 물품구입비 절감
- 사 업 량 : 중장비 임차, 꽃지해안공원 공중화장실 1년 운영, 행정대집행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안면도관광지구 시설물 관리·운영 등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 : 51,180천원 ○ 장비임차료 : 5,100천원 - 굴삭기 : 550천원 × 2대 × 3회 = 3,300천원 - 차량(15ton) : 300천원 × 2대 × 3회 = 1,800천원 ○ 꽃지해안공원 일원 소요 물품 : 12,080천원 - 롤화장지(35,700원 × 90bx) = 3,213천원 - 종량제봉투(75ℓ, 1bx × 472,000원 × 5bx) = 2,360천원 - 화장실 청소용품(락스, 쓰레기봉투, 물비누 등) = 2,000천원 - 기계부품(예초기날 등) 및 수리비 : 2,400천원 - 기타 소요물품 등 : 2,107천원 ○ 안면도관광지구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비용 : 3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54,180	-	54,180	51,180	-3,000	-	
국 비	-	-			0	-	
도 비	54,180	-	54,180	51,180	-3,000	-	
시군비	-	-			0	-	
기 타	-	-			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58,680	52,476	6,204	89.4%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전서영 외 1명 (행) 3892

안면도관광지 도유재산관리(국내여비)	정책사업	관광산업진흥
	단위사업	안면도관광지 개발 및 운영
	세부사업	안면도관광지 재산관리
	통 계 목	국내여비 (202-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면도관광지 내 도유재산 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기본 경비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승언·중장·신야리 일대(안면도관광지)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500천원(도비) 【기정예산 4,500 + 추경 중 3,000】**
 ※ 증감 사유 : '20 본예산 성립 당시 일반직 1인 기준 산정하였으나, 신규발령으로 일반직 2인으로 증가
- 사 업 량 : 재산관리업무를 위한 국내여비(1년 관내·관외 출장여비)
- 사업시행방법 : 직접시행
- 사업시행주체 :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 사업 내용 : 안면도 관광지구 및 꽃지해수욕장 일원 당면업무 추진 국내여비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2항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②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도유재산관리 기본경비 : 7,500천원 ○ 국내여비(국내여비202-01) : 7,500천원 - 여비 : 7,500천원 ·관내 20천원 × 2명 × 120일 = 4,800천원 ·관외 57천원 × 2명 × 24일 = 2,7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3회추경(B)	증감(B-A)		
계	4,500	-	4,500	7,500	3,000	-	계속
국 비	-	-			0	-	
도 비	4,500	-	4,500	7,500	3,000	-	
시군비	-	-			0	-	
기 타	-	-			0	-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19년	6,500	6,490	10	99.8%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19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안면도개발팀	허창덕 (행) 2440	강연순 (행) 3875	전서영 외 1명 (행) 3892